

군산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군산시장



2012년 4월 2일

군산시 조례 제1017호

군산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

군산시 건축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군산시 건축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4조제1항제2호”를 “제5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4. 미관지구안의 건축물로서 법 제11조(건축허가)에 따른 허가대상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5.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및 대수선(영 제3조의2제7호에 따른 대수선에 한정한다)에 관한 사항
 - 가. 사용승인 전 분양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공동주택은 제외한다)
 - 나. 1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기숙사를 제외한다)

제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②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득한 건축물과 제1항의 심의를 득한 건축물(기존 건축물을 포함한다)로서 영 제5조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기존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법 제6조 및 영 제6조의2에 따라 기존의 건축물 및 대지가 법령의 제정·개정이나 영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유로 법, 영 또는 군산시 건축 조례(이하 “법령 등”이라 한다)에 부적합하더라도 영 제6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

제19조의2 중 “제30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를 “용도변경 하고자 하는 부분이 법령 등에 따라 적합한 범위에서 용도변경을 할 수 있다”로 한다.

제22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과 관련되는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할 건축사 선정 등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할 건축사는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 또는 공사감리자가 아닌 건축사로 건축주의 추천을 받지 아니하고 허가권자가 직접 선정한다.
2. 선정 방법은 대한건축사협회 군산시 건축사회로부터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할 건축사 명단을 제출받아 추첨으로 지정한다.(지정을 받은 대행건축사가 출장 등 부득이한 경우 재 추첨으로 업무대행자를 지정한다)
3. 업무대행자로 지정된 건축사는 허가권자로부터 사용승인검사 등을 위한 도면을 교부받고 현장조사·검사 등을 실시한 후 법정처리기한까지 시행규칙 별지 제24호 서식의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에 서명 날인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수수료는 대한건축사협회 군산시 건축사회를 통하여 해당연도 6월과 12월에 지급한다.

제25조제1항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미관지구 안의 건축선 후퇴한 부분에는 도시미관 향상 및 주·정차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흉고직경 10센티미터 이상으로서 수고 4미터 이상의 교목 또는 수관폭 1.5미터 이상으로서 둥근형 반송 등 교목을 길이 5미터 간격을 유지하여 식재하고 교목 주변에 관목을 심고 의자·파고라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목 수목당 8제곱미터로 산정한 면적은 제1항에 따른 조경면적에 산입할 수 있으며, 견고한 수목구 및 삼각지지대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건축허가를 신청 중인 경우와 건축 허가를 받았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 중인 경우의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 규정에 비하여 건축주·시공사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 규정에 의한다.

신·구조문 대조표

현행	개정안	개정사유
제5조(건축심의대상) 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전라북도 건축 조례」 제4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전라북도건축위원회에서 심의한다.	제5조(건축심의대상) ①----- ----- ----- 제5조제1항----- ----- -----.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4. 미관지구안의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다만, 너비 25미터 미만 도로에 접한 미관지구안에서 연면적합계 85제곱미터 미만의 증축, 개축, 재축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4. 미관지구안의 건축물로서 법 제11조(건축허가)에 따른 허가대상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소규모 건축 신고대상 건축물 건축심의 제외
5.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5.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및 대수선(영 제3조의2제7호에 따른 대수선에 한정한다)에 관한 사항 가. 사용승인 전 분양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공동주택은 제외한다) 나. 1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기숙사를 제외한다)	종전 3천㎡에서 5천㎡로 조정,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 건축 심의 적용으로 도시미관 향상, 쾌적한 주거 공간 확보
6. · 7. (생략)	6. · 7. (현행과 같음)	
② 「건설기술관리법」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건축물과 제1항의 심의를 받은 건축물(기존 건축물을 포함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②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득한 건축물과 제1항의 심의를 득한 건축물(기존 건축물을 포함한다)로서 영 제5조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	건축법시행령 개정으로

해당하는 설계변경이 있는경우에
는 위원회의 재심의를 받아야 한
다.

1. 건축연면적의 10분의 2를 초
과하여 증가하는 변경
2. 건축물의 동수(부속건축물은
제외한다) 및 층수를 2개동(2
개층) 이상 증가하는 변경
3. 위원회가 심의한 지적사항 또
는 심의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③ (생 략)

제15조(기존 건축물 등에 대한 특
례) 법 제6조 및 영 제6조의2제1
항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기존 건축물 및 대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건축
(재축·증축·개축에 한한다) 및
용도변경을 허가하거나 신고할 수
있다.

1. 재축 : 부적합한 정도가 종전보
다 더 심화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
2. 증축 또는 개축 : 증축 또는 개
축하고자 하는 부분이 법령 등
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
3. 용도변경 : 영 제1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하고자 하는
용도 및 시설 기준 등이 법령 등
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
4. 기존 건축물의 대지가 도시계
획시설의 설치 또는 「도로법」
에 의한 도로의 설치로 인하여
제29조에 따른 의한 분할 제한
면적에 미달되는 경우로써 당해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 범

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생
략할 수 있다.

③ (현행과 같음)

제15조(기존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법 제6조 및 영 제6조의2에 따라
기존의 건축물 및 대지가 법령의
제정·개정이나 영 제6조의2제1
항 각 호의 사유로 법, 영 또는 군
산시 건축 조례(이하 “법령 등”
이라 한다)에 부적합하더라도 영
제6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을 허가
할 수 있다.

해당내용을
조례에 반영
조문 정리

본 조 각호
사항이 영에
명시되어 있어
조문 단순화

위 내에서의 증축 또는 개축
 5. 2006년 5월 9일 전에 건축된
 기존 건축물의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가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거리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그 기존건축
 물을 수직으로 증축하는 경우

제19조의2(용도변경 완화) 영 제14
 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존 건
 축물 또는 대지가 법령의 제정·
 개정이나 영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유로 법령 등에 부적합하
 게 된 경우에는 제30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제22조(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업
 무의 대행) ①·② (생 략)

③시장은 법 제27조제1항 및 영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
 1항 및 제2항의 업무 대행자에게
 업무대행을 하게 하는 경우에는
 「건축사법」에 의하여 설치된 건
 축사협회와 협의하여 업무대행절
 차를 따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대행자가
 시행규칙 제21조제1항에 따른 건
 축허가조사 및 검사조서를 첨부하
 여 건축허가 등을 신청한 경우에
 는 시장의 업무를 대행한 것으로
 본다.

제19조의2(용도변경 완화) -----

 ----- 용도변경 하고자 하는 부분
 이 법령 등에 따라 적합한 범위에
 서 용도변경을 할 수 있다.

제22조(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업
 무의 대행)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에 따른 사용승인 및 임시
 사용승인과 관련되는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할 건축사
 선정 등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할 건축사는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 또는 공사감리자가 아닌
 건축사로 건축주의 추천을 받지
 아니하고 허가권자가 직접 선정
 한다.

2. 선정 방법은 대한건축사협회 군
 산시 건축사회로부터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할 건
 축사 명단을 제출받아 추천으로
 지정한다.(지정을 받은 대행건축
 사가 출장 등 부득이한 경우 재

운영 미비사항
 조문 정리

업무대행자
 선정 방법 및
 절차 등을
 따로 정함
 - 종전에는
 업무대행자를
 건축사협회가
 지정하던 것을
 허가권자가
 직접 선정
 업무대행의
 투명성·공정성
 확보함

추첨으로 업무대행자를 지정한다)

3. 업무대행자로 지정된 건축사는 허가권자로부터 사용승인검사 등을 위한 도면을 교부받고 현장 조사·검사 등을 실시한 후 법정 처리기한까지 시행규칙 별지 제 24호 서식의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에 서명 날인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생략)

〈신설〉

제25조(조경면적) ①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 건축하는 경우에는 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면적(이하 “조경의 무면적” 이라한다)을 확보하여야 한다.

1. ~ 3. (생략)

4. 보전녹지지역 안의 건축물 : 제 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지면적의 20퍼센트 이상. 다만, 학교시설, 공항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은 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을 집단화하여 식재하여야 한다.

② (생략)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경면적

④ (현행과 같음)

⑤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수수료는 대한건축사협회 군산시 건축사회를 통하여 해당연도 6월과 12월에 지급한다.

제25조(조경면적) ①-----

-----.

1. ~ 3. (현행과 같음)

〈삭제〉

② (현행과 같음)

③-----

대행수수료
지급대상을
명확히 정함

건축법시행령
개정으로
녹지지역
조경식재 대상
건축물에서
제외됨

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1. · 2. (생 략)

3. 미관지구 안의 건축선 후퇴한 부분에는 도시미관 향상 및 주·정차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흉고직경 8센티미터 이상으로서 수고 4미터 이상의 교목을 심거나 높이 80센티미터 이상의 화단을 조성 관목을 심고 주변에는 의자·파고라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목 수목당 8제곱미터로 산정한 면적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경면적에 산입할 수 있으며, 견고한 수목구 및 삼각지지대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④ (생 략)

-.

1. · 2. (현행과 같음)

3. 미관지구 안의 건축선 후퇴한 부분에는 도시미관 향상 및 주·정차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흉고직경 10센티미터 이상으로서 수고 4미터 이상의 교목 또는 수관폭 1.5미터 이상으로서 둥근형 반송 등 교목을 길이 5미터 간격을 유지하여 식재하고 교목 주변에 관목을 심고 의자·파고라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목 수목당 8제곱미터로 산정한 면적은 제1항에 따른 조경면적에 산입할 수 있으며, 견고한 수목구 및 삼각지지대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④ (현행과 같음)

실질적인
간선로변
조경식재
유도로
미관 향상

군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의 증인 출석거부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군산시장



2012년 4월 2일

군산시 조례 제1018호

군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의 증인 출석거부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부과대상) 과태료는 군산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요구를 받은 시장,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인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 서류제출을 요구받고 정당한 사유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 제41조 및 같은법 제27조와 이 조례에 의하여 시의회 의장의 통보 등으로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제3조(부과기준) 제2조에 의한 과태료 부과는 별표의 기준에 따른다.

제4조(과태료처분 통지 등) ①시장은 법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처분의 사전통지를 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처분의 사전통지를 할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처분대상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의견을 제출하여

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5조(부과·징수 등) ① 과태료는 의회 의장의 통보에 의하여 시장이 부과·징수 하고 그 결과를 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과태료 처분을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과태료 처분통지서와 [별지 제4호서식]의 과태료 납부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③과태료의 납부기한은 납부고지서를 발부한 날 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④시장은 제4항의 납부기한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된 날부터 7일 이내에 10일간의 납부 기한을 정한 독촉장을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발부하여야 한다.

제6조(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 ①시장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별지 제6호서식]에 의거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시장은 지체 없이 관할법원에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하여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가 제기되었음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도 법원에 통보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강제징수) 시장은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6조 규정에 의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독촉 기한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제8조(준용규정)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것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과태료 부과기준 (제3조 관련)

원인 행위별	금 액
서류제출 또는 출석요구 불응 3회 이상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
서류제출 또는 출석요구 불응 2회 이상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서류제출 또는 출석요구 불응 1회 이상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선서 또는 증언 거부	300만원 이하

비고 : 출석요구 불응 1회는 “1일간의 불출석을 말한다”로 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처 분 사 전 통 지 서(의견제출 통지)

문서번호 :

시 행 일 :

수 신 : 귀하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2. 당 사 자	성 명(명칭)		
	소 재 지		
3. 처분 원인이 되는 사실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5.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6. 의견 제출	기 관 명	부 서 명	
		담 당 자	
	주 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모사전송	
	제출기한	년 월 일까지	

군 산 시 장 (인)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위의 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서면·컴퓨터통신 또는 구술로 의견 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 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컴퓨터 통신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 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4.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 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2호 서식】

의 건 제 출 서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2. 당 사 자	성명(명칭)	
	주 소	
3. 의 건		
4.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 제출인 주소 :

(전화 :)

성명

(서명 또는 인)

군산시장 귀하

비 고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 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와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별지 제3호 서식】

제 호

수 신

제 목 과태료처분통지

1. 귀하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위반한 사실이 있습니다.

가. 위반일시 :

나. 위반내용 :

2. 위의 위반사실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군산시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의 증인 출석거부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에 의하여(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니 년 월 일까지 시중은행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3.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을 경우에는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시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됩니다.

따로붙임 과태료 납부통지서1부

년 월 일

군 산 시 장

【별지 제4호 서식】

과태료납부통지서
(개인통지용)

제 호	회계년도	20	년도
세입과 목			
납 부 의무자	성 명		
	주 소		
과 태 료 금 액			
위의 과태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군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의 증인 출석거부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은행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과태료통지서
(수납은행보관용)

제 호	회계년 도	20	년도
세입 과목			
납 부 의무자	성 명		
	주 소		
과 태 료 금 액			
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수 납 은 행 : (인)			
수납일 부인			

영수필통지서
(시 통보용)

제 호	회계년도	20	년도
세입과 목			
납 부 의무자	성 명		
	주 소		
과 태 료 금 액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수 납 은 행 : (인)			
수납일 부인			

영수필통지서
(개인통지용)

제 호	회계년도	20	년도
세입과 목			
납 부 의무자	성 명		
	주 소		
과 태 료 금 액			
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수 납 은 행 : (인)			
수납일 부인		취급자인	

【별지 제5호 서식】

제 호

과 태 료 납 부 독 촉 장

납 부	성 명		주민등록번호	
의무자	주 소			
과 태 료 납 부 통 지 서 번 호				
위 반 사 항				
과태료금액			당초납부기한	

위의 과태료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 하게 됩니다.

 년 월 일

군 산 시 장 (인)

신 청 인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과 태 료 처분내역	부과기관		납부통지서 번 호	
	고 지 받 은 일 자		과 태 료 금 액	
	과 태 료 처분사유			
과태료 처분 이의신청사유				
「군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의 증인 출석거부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위의 과태료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위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군산시장 귀하				
구 비 서 류	없 음			

【별지 제7호 서식】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통보서

제 호

받 음 : 지방법원장 보 냄 : 군산시장 (인)

제 목 :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통보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 처분을 한바, 본인 으로부터 다음과 같이 이의 제기가 있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통보합니다.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 제기자	성 명		주민등록 번 호	
	주 소			
과 태 료 처 분 내 역	고지일자		과태료금액	
	납부기한		부과기관	
	과 태 료 처분사유			
이 의 제 기 일				
이 의 신 청 사유				
이 의 신 청 에 대 한 의 견				

첨 부 1. 과태료 처분 통지서 사본 1부.
2.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서 사본 1부. 끝.

군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군산시장 문 동 신

2012년 4월 2일

군산시 조례 제1019호

군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

군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항 본문 중 “7일 이내”를 “9일 이내”로 한다.

제9조 제4항을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감사) ① (생략)	제2조(감사) ① (현행과 같음)
②제1항의 감사는 매년 제1차 정례회 기간중 <u>7일 이내</u> 로 설치하되 상임위원회 또는 감사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하고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확정된 감사계획서에 의하여 행한다	②제1항의 감사는 매년 제1차 정례회 기간중 <u>9일 이내</u> ----- ----- ----- -----.
제9조(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제9조(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①~③ (생략)	①~③ (현행과 같음)
④제1항의 요구를 받은 시장,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의회회장의 통보등으로 시장이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④ <u><삭제></u>
⑤~⑥ (생략)	⑤~⑥ (현행과 같음)

공 고

군산시 공고 제2012-690호

『군산시 시세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4월 2일

군 산 시 장

군산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한·미 FTA 발효 시행에 따라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자동차세 과세구간이 5단계에서 3단계로 축소되고 세율이 일부 인하('11.12.2.공포, 지방세법 개정)되는 내용을 반영하여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한·미 FTA 발효일('12.3.15.)부터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자동차세 세율구간 축소 및 세율인하(안 제24조제1호)

현 행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배기량	시시당 세액
800시시 이하	80원
1,000시시 이하	100원
1,600시시 이하	140원
2,000시시 이하	200원
2,000시시 초과	220원



개 정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배 기 량	시시당 세액
1,000시시 이하	80원
1,600시시 이하	140원
1,600시시 초과	200원

3. 의견제출

이 군산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2년 4월 23일까지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시장(참조 : 세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 (1) 예고 사항에 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이유)
-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할 곳 : 우) 573-703 군산시 시청로 17번지 (조촌동 888번지)
군산시청 세무과(전화 063-450-4297, 팩스 063-452-8162, 전자우편 : aone33@korea.kr)

다.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전자우편,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 이든 가능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세무과 세정계 (전화 063-450-4297 담당자 최광식)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군산시 조례 제 호

군산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산시 시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주택에 대한 재산세 산출세액이”를 “해당 연도에 부과할 세액이”로 한다.

제24조제1호의 표 중 비영업용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비영업용	
배기량	시시당 세액
1,000시시 이하	80원
1,600시시 이하	140원
1,600시시 초과	200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의 세율에 관한 적용례) 2012년도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의 연세액을 계산할 때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및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관한 서한교환」이 발효된 날부터 이 조례의 시행일 전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연세액 상당분은 종전의 제24조제1호에도 불구하고 제24조제1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및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관한 서한교환」의 발효일 당시 종전의 제24조제1호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6조(납기) 법 제115조제1항		제16조(납기) -----																																																										
제3호 단서에 따라 주택에 대		----- 해당 연도에																																																										
한 재산세 산출세액이 5만원		부과할 세액이 -----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		-----																																																										
여 한꺼번에 부과·징수한다.		-----.																																																										
제24조(과세표준과 세율)(생 략)		제24조(과세표준과 세율)(현행과																																																										
		같음)																																																										
1. 승용자동차: 다음 표의 구분		1. -----: -----																																																										
에 따라 배기량에 시시당 세		-----																																																										
액을 곱하여 산정한 세액을		-----																																																										
자동차1대당 연간세액으로 한		-----																																																										
다.		--.																																																										
<table><tr><th colspan="2">영업용</th><th colspan="2">비영업용</th></tr><tr><th>배기량</th><th>시시당 세액</th><th>배기량</th><th>시시당 세액</th></tr><tr><td>1,000시시 이하</td><td>18원</td><td><u>800시시</u> 이하</td><td><u>80원</u></td></tr><tr><td>1,600시시 이하</td><td>18원</td><td><u>1,000시시</u> 이하</td><td><u>100원</u></td></tr><tr><td>2,000시시 이하</td><td>19원</td><td><u>1,600시시</u> 이하</td><td><u>140원</u></td></tr><tr><td>2,500시시 이하</td><td>19원</td><td><u>2,000시시</u> 이하</td><td><u>200원</u></td></tr><tr><td>2,500시시 초과</td><td>24원</td><td><u>2,000시시</u> 초과</td><td><u>220원</u></td></tr></table>		영업용		비영업용		배기량	시시당 세액	배기량	시시당 세액	1,000시시 이하	18원	<u>800시시</u> 이하	<u>80원</u>	1,600시시 이하	18원	<u>1,000시시</u> 이하	<u>100원</u>	2,000시시 이하	19원	<u>1,600시시</u> 이하	<u>140원</u>	2,500시시 이하	19원	<u>2,000시시</u> 이하	<u>200원</u>	2,500시시 초과	24원	<u>2,000시시</u> 초과	<u>220원</u>	<table><tr><th colspan="2">-----</th><th colspan="2">-----</th></tr><tr><th>-----</th><th>-----</th><th>-----</th><th>-----</th></tr><tr><td>-----</td><td>-----</td><td><u>1,000시시</u> 이하</td><td><u>80원</u></td></tr><tr><td>-----</td><td>-----</td><td><u>1,600시시</u> 이하</td><td><u>140원</u></td></tr><tr><td>-----</td><td>-----</td><td><u>1,600시시</u> 초과</td><td><u>200원</u></td></tr><tr><td>-----</td><td>---</td><td><삭 제></td><td><삭 제></td></tr><tr><td>-----</td><td>---</td><td><삭 제></td><td><삭 제></td></tr></table>			-----		-----		-----	-----	-----	-----	-----	-----	<u>1,000시시</u> 이하	<u>80원</u>	-----	-----	<u>1,600시시</u> 이하	<u>140원</u>	-----	-----	<u>1,600시시</u> 초과	<u>200원</u>	-----	---	<삭 제>	<삭 제>	-----	---	<삭 제>	<삭 제>
영업용		비영업용																																																										
배기량	시시당 세액	배기량	시시당 세액																																																									
1,000시시 이하	18원	<u>800시시</u> 이하	<u>80원</u>																																																									
1,600시시 이하	18원	<u>1,000시시</u> 이하	<u>100원</u>																																																									
2,000시시 이하	19원	<u>1,600시시</u> 이하	<u>140원</u>																																																									
2,500시시 이하	19원	<u>2,000시시</u> 이하	<u>200원</u>																																																									
2,500시시 초과	24원	<u>2,000시시</u> 초과	<u>220원</u>																																																									
-----		-----																																																										
-----	-----	-----	-----																																																									
-----	-----	<u>1,000시시</u> 이하	<u>80원</u>																																																									
-----	-----	<u>1,600시시</u> 이하	<u>140원</u>																																																									
-----	-----	<u>1,600시시</u> 초과	<u>200원</u>																																																									
-----	---	<삭 제>	<삭 제>																																																									
-----	---	<삭 제>	<삭 제>																																																									
2. ~6. (생 략)		2. ~6. (현행과 같음)																																																										

군산시 공고 제2012-691호

군산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와 『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4월 2일

군 산 시 장

군산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유통산업발전법」 일부 개정 법률이 2012. 1. 17일자로 공포됨에 따라 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을 지정함으로써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 및 지역경제의 상생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안 제10조의2신설)

-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에 따라 대규모점포 중 대통령령(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것과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 영업시간 제한은 오전 0시부터 8시까지 하고
 - 의무휴업일은 매월2일로 두 번째 일요일과 네 번째 일요일로 한다.
- 다만, 연간 총매출액 중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1퍼센트 이상인 대규모점포 등은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을 제외함

나. “대규모점포 중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것”은 해당규정이 개정 시행되는 날부터 적용함 (부칙안 제2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4월 23일 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시장(참 조:지역경제과장)에게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사항

- (1)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할 곳 : 우)573-703 군산시 시청로 17(조촌동 888번지)
군산시청 지역경제과(전화 : 063-450-4352, 팩스 : 063-450-6391, 전자우편 : hbs1230@korea.kr)

다.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 지역경제과 담당자 함봉석(전화:063-450-4352)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군산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산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대규모점포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 시장은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에 따라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대규모점포 중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것과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고,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휴업을 명하여야 한다. 다만, 연간 총매출액 중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1퍼센트 이상인 대규모점포등은 제외한다.

1. 영업시간 제한 :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2. 의무휴업일 지정 : 매월 두 번째 일요일과 네 번째 일요일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제10조의2에 따른 “대규모점포 중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지식경제부 공고 2012-46호)으로 정하는 것”은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중 해당 규정이 개정 시행되는 날부터 이를 적용한다.

신 · 구 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신 설>	제10조의2(대규모점포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 시장은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에 따라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대규모점포 중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것과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고,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휴업을 명하여야 한다. 다만, 연간 총매출액 중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1퍼센트 이상인 대규모점포 등은 제외한다.

현행	개정안
<신설>	1. <u>영업시간 제한</u> :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2. <u>의무휴업일 지정</u> : 매월 두 번째 일요일과 네 번째 일요일

군산시 고시 제2012-33호

도시계획시설(학교:간호전문대)사업 실시계획 인가 고시

도시계획시설(학교:간호전문대)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의거 실시계획 인가하고, 같은법 제9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관계도서는 군산시청(도시계획과 450-4447)에 비치하고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군 산 시 장

2012년 3월 일

1. 사업시행지 : 군산시 개정동 31-5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가. 종 류 : 도시계획시설(학교:간호전문대)
 - 나. 명 칭 : 도시계획시설(학교증축공사)사업
3.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구 분	시설명	결정(㎡)			건축계획(㎡)		비 고
		부지 면적	건축 면적	연 면적	기존	금 회	
학교	간호전문대	11,006	2,853	9,482	건축: 1,900.79 연면적: 5,780.435	건축면적: 2,847.83 (증 947.04㎡) 연면적: 9,417.395 (증 3,636.96㎡)	미래관증축 (1동/4층)
계							

4. 사업시행자
 - 가. 사업시행자 주소 : 군산시 개정동 413번지
 - 나. 사업시행자 성명 : 학교법인 경암학원 대표 최영희
5.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일 : 2012. 3 ~ 2013. 3. 31
6.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등의 조서 : 붙임조서 참조
7.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8. 관계도서 : 게재실음 생략

□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순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소 유 자		소유권이외의권리자		비고
						성명	주 소	성명	주소	
1	개정동	31-5	학	5,411	5,411	학교법인 경암학원	군산시 개정동 413			
2	개정동	31-23	도	122	114					
3	개정동	413-6	도	727	639					
4	개정동	431-7	학	4,406	4,406					
5	개정동	668-7	학	436	436					
계	5 필지			11,102	11,006					

군산시 고시 제2012-34호

군산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군산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주차장, 도로) 결정(변경)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하고 동 관련도서 사본을 군산시 도시계획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군 산 시 장

2012년 3월 일

1. 군산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조서

가. 도시계획시설(주차장)

구분	도면 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신설	70	주차장	군산시 개정면 발산리 49-5번지	-	1,356	1,356	금회	

나. 도시계획시설(도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2	869	8	국지 도로	255	발산리 중로3-53	발산리 소로3-552	일반 도로		'92.06	
변경	소로	2	869	8	국지 도로	297	발산리 중로3-53	발산리 42-4 도	일반 도로		'92.06	
신설	소로	2	978	8	국지 도로	29	발산리 49-5 답	발산리 소로2-869	일반 도로		금회	

2. 군산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도서 : 실음생략. 끝.

군산시 고시 제2012-36호

군산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폐지) 및 지형도면 고시

군산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폐지)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규정에 따라 결정하고 같은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고시하고 동 관련도서 사본을 군산시 도시계획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군 산 시 장

2012년 3월 23일

1. 군산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공공청사) 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조서

구분	도면 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폐지	2	공공청사	조촌동 862	662	감)662	-	전북고98 (‘88.2.7)	

2. 군산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공공청사) 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도서 : 실음생략. 끝.

군산시 공고 제2012-37호

고 시

1. 군산시 금광지구 주거환경개선 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0조의규정에 의한 사업시행계획서를 동법 제31조 및 동법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공람공고 완료하여 동법 제28조 동법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그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군산시청(건축과 ☎063-450-4475)에 비치하고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 에 게 보입니다.

2012년 3월 16일

군 산 시 장

1.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구 분	합 계	현지개량 용 지	정비기반시설용지					비고
			계	도로	소공원	주차장	공공공지	
면적(㎡)	79,374	60,667	18,707	8,703	699	1,972	7,333	
구성비(%)	100.0	76.4	23.6	11.0	2.5	9.2	0.9	

2.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의 설치계획

○ 도로

구 분	구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 정	소로	2	31	8	집산 도로	605 (278)	송창동 14호광장	오룡동 대 3-2	일반 도로		건고 525 ('67.7.25)	
변 경	소로	2	31	8	집산 도로	605 (278)	송창동 14호광장	오룡동 대 3-2	일반 도로		건고 525 ('67.7.25)	
기 정	소로	3	477	6	국지 도로	74 (74)	금광동 170-65 소 2-36	오룡동 소 2-31	일반 도로		건고 525 ('67.7.25)	
폐 지	소로	3	477	6	국지 도로	74 (74)	금광동 170-65 소 2-36	오룡동 소 2-31	일반 도로		-	

※ ()는 구역내 도로임

○ 주차장

구 분	도 면 표시번호	시 설 명	위 치	면 적(m²)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신설	67	주차장	군산시 오룡동 931-5번지 일원	-	증)1,972	1,972	금회	-

○ 공공공지

구 분	도 면 표시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m²)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신설	11	공공공지	군산시 금광동 157-63번지 일원	-	증)7,333	7,333	금회	

○ 소공원

구 분	도 면 표시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m²)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신설	9	소공원	군산시 명산동 20-8번지 일원	-	증)699	699	금회	

3. 임시수용시설을 포함한 주민 이주대책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거 대상여부를 검토하여 이주 정착금, 주거이전비, 이사비등 지급

4. 세입자의 주거대책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거 대상 여부를 검토하여 주거 이전비, 이사비등 지급

5. 임대주택의 건설계획

- 해당사항 없음

6. 건축물의 높이 및 용적율 등에 관한 건축계획

○ 상업용지

구 분	계 획 내 용	비고
용 도	- 건축물의 허용용도(건축법 시행령 별표1 기준) 제1호(단독주택) 제2호(공동주택) 제3호(제1종근린생활시설) 제4호(제2종근린생활시설 단, 안마시술소·단란주점 제외) 제5호(문화 및 집회시설) 제6호(종교시설) 제7호(판매시설) 제9호(의료시설) 제10호(교육연구시설) 제11호(노유자시설) 제12호(수련시설) 제13호(운동시설) 제14호(업무시설) 제18호(창고시설) 제20호(자동차관련시설 중 가목 주차장 및 나목 세차장) 제24호(방송통신시설) 제27호(관광휴게시설) - 건축물의 불허용도 : 허용용도 외의 건축물	
건폐율	• 80% 이하	
용적률	• 1,000% 이하	
높이(층수)	• 10층이하	

○ 주거용지

구 분	계 획 내 용	비고
용 도	- 건축물의 허용용도(건축법 시행령 별표1 기준) 제1호(단독주택) 제2호(공동주택) 제3호(제1종근린생활시설) 제4호(제2종근린생활시설 단, 안마시술소·단란주점 제외) 제5호(문화 및 집회시설) 제6호(종교시설) 제7호(판매시설) 제9호(의료시설) 제10호(교육연구시설) 제11호(노유자시설) 제12호(수련시설) 제13호(운동시설) 제14호(업무시설) 제18호(창고시설) 제20호(자동차관련시설 중 가목 주차장 및 나목 세차장) 제24호(방송통신시설) - 건축물의 불허용도 : 허용용도 외의 건축물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250% 이하	
높이(층수)	• 10층이하	

※ 도시계획시설의 경우에는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름

7. 정비사업의 시행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계획

- 지장물 철거 및 정비기반시설 설치시 발생하는 건설 폐재류, 폐콘크리트, 혼합폐기물, 지정폐기물 등은 성상별, 재활용 가능여부 등으로 분리, 수집 하여 위탁처리 업체로 하여금 가능한 재활용 처리하고 나머지는 매립 또는 소각처리토록 함

- 사업 시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은 재활용, 소각, 매립등 군산시 쓰레기 처리 계획에 의거 처리할 계획임.

7의1. 교육시설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구 분	계 획 내 용		
교육환경 현 황	금광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구역을 경계로 500m 인근에 초등학교 2개소 (금광초교, 월명초교) 및 중학교 1개소(군산중), 고등학교 1개소(군산기계공고), 대학교 1개소(서해대학) 가 위치하고 있음		
교육환경 보호계획	공사시 발생하는 소음 및 진동에 대하여 다음의 기준을 적용		
	구 분	주간(07:00~18:00)	야간(18:00~07:00)
	소음[dB(A)]	65이하	50이하
	진동[dB(V)]	70이하	65이하
	- 교육시설의 보건관리와 환경위생 등에 지장을 초래하는 시설의 설치를 지양 - 공사시 교육환경 장애요소 (소음·진동·먼지 등)의 발생이 최소화 되도록 계획 - 교육시설 이용시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학할수 있도록 계획		

8. 시행규정

-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 ▶ 군산시 금광지구 주거환경개선 정비사업
- 정비사업의 시행년도 및 시행방법
 - ▶ 시행년도 : 2011년 ~ 2014년
 - ▶ 시행방법 : 현지개량 방식
- 비용부담 및 회계에 관한 사항
 - ▶ 사업비 : 7,500백만원 (국비 50%, 시비 50%)
- 공고, 공람 및 통지의 방법
 - ▶ 공고, 공람 : 시보, 군산시 홈페이지, 삼학동 주민센터 게시판 등
 - ▶ 통보 : 개별통보
- 토지 및 건축물에 관한 권리의 평가방법에 관한 사항
 - ▶ 감정평가에 의함

6)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 군산시 금광동 156-1번지 일원

▶ 면 적 : 79,374m²

7)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명칭

▶ 주 소 : 군산시 시청로 17 (조촌동 888번지)

▶ 성 명 : 군산시장

8) 토지 또는 건축물등에 관한 권리자 및 그 권리의 명세 : 별첨

9)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양여되는 국·공유지 조서 : 별첨

10) 기타 관계도서는 군산시청 건축과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 에게보입니다.

군산시 고시 제2012-39호**임피농공단지 편입토지 세목 변경 고시**

1. 군산 임피농공단지 사용·수용할 토지의 세목 변경 사항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변경 고시합니다.
2. 관련 편입 세목토지조서는 군산시청 투자지원과(☎063-450-6177), 한국농어촌공사 군산지사 지역개발팀(☎063-850-8276)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2. 3. 22.

군 산 시 장

농공단지 편입토지 세목 변경

[변경전]

○ 토지 세목조서

토 지 조 서 (총 괄)										
공익사업의 종류 및 명칭					군산 임피농공단지조성사업					
사업인정의 근거 및 고시일										
사업시행자		성명 또는 명칭			군산시장					
		주 소			전북 군산시 조촌동 888					
토지소유자		성명 또는 명칭			144필지					
		주 소								
토지의 내역										
연 번	소재지	지번 (당초지번)	지목	현실적인이용상황	전체면적	편입면적	용도지역 및지구	토 지 소 유 자		비고
								성명또는명칭	주 소	
계					263,128	239,187				
1	축산리	97-1	대	대	342	342	보전관리지역	최정민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함정리 157-6	
2	축산리	97-2	답	전	76	76	보전관리지역	동상새마을회	읍내리 491-1	
3	축산리	101-1	임	임	1605	1605	보전관리지역	최정민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함정리 157-6	
4	축산리	101-3	전	잡	1351	1351	보전관리지역	박용성	나운동 751-5 신한파크101호	
5	축산리	101-8	임	임	6075	6075	보전관리지역	최영권	명산동 7-7	
6	축산리	101-9	임	임	4471	4471	보전관리지역	한양조씨고부 공파농은종중	미원리 324	
7	축산리	102-1	묘	묘	516	516	보전관리지역	고천형빈	미원리 350	
8	축산리	102-2	전	전	1699	1699	보전관리지역	오세봉외3인	서울 관악구 봉천동 881-28, 402호	
9	축산리	103-1	임	임	11831	11831	보전관리지역	조성길외1인	미원리 324	
10	축산리	104	창	창	1507	1507	보전관리지역	장민	축산리 104	
11	축산리	106	대	대	659	659	보전관리지역	장민	축산리 104	
12	축산리	106-1	답	잡	1090	1090	보전관리지역	김혜기	충남 태안군 이원면 내리 594-2	
13	축산리	109	답	잡	429	429	보전관리지역	조철희	임피면 미원리 350	
14	축산리	124-1	답	잡	346	346	보전관리지역	김혜기	충남 태안군 이원면 내리 594-2	
15	축산리	135-3	답	잡	85	85	보전관리지역	오정일	축산리 139-2	
16	축산리	136-3	도	대	6	6	보전관리지역	오창성	축산리 35	
17	축산리	136-4	도	대	10	10	보전관리지역	오창성	축산리 35	
18	축산리	136-5	도	잡	18	18	보전관리지역	오창성	축산리 35	
19	축산리	137-1	대	대	71	71	보전관리지역	오정일	축산리 139-2	
20	축산리	137-2	도	대	17	17	보전관리지역	오창성	축산리 35	
21	축산리	137-3	대	도	22	22	보전관리지역	군산시		

22	축산리	138-1	전	대	474	474	보전관리지역	오정일	축산리 139-2	
23	축산리	138-3	도	대	112	112	보전관리지역	강우현	읍내리 436	
24	축산리	138-4	대	대	50	50	보전관리지역	오정일	축산리 139-2	
25	축산리	138-6	전	도	373	373	보전관리지역	군산시		
26	축산리	138-7	전	대	84	84	보전관리지역	오정일	축산리 139-2	
27	축산리	139-1	도	대	7	7	보전관리지역	오창성	축산리 35	
28	축산리	139-2	대	대	612	612	보전관리지역	오정일	축산리 139-2	
29	축산리	140-1	답	답	1315	1315	보전관리지역	오정일	축산리 139-2	
30	축산리	141	대	대	1385	1385	보전관리지역	전북은행		
31	축산리	142	전	답	747	747	보전관리지역	오정일	축산리 139-2	
32	축산리	143-1	임	도	155	155	보전관리지역	강병식		
33	축산리	143-2	임	임	4727	4727	보전관리지역	군산시		
34	축산리	143-4	임	임	5289	5289	보전관리지역	노영자	군산시 대야면 보덕리 295-1	
35	축산리	143-6	임	도	609	609	보전관리지역	군산시		
36	축산리	145-1	답	답	594	594	농림지역	정인창	축산리 189	
37	축산리	146-1	도	도	7	7	농림지역	국(건설부)		
38	축산리	146-2	도	도	7	7	농림지역	국(건설부)		
39	축산리	146-3	답	답	2238	2238	농림지역	박종호	축산리 189	
40	축산리	146-5	답	도	134	134	농림지역	군산시		
41	축산리	147-2	답	답	483	483	농림지역	정인창	축산리 189	
42	축산리	147-4	답	도	2	2	농림지역	군산시		
43	축산리	152-1	전	답	1031	1031	보전관리지역	백정덕	읍내리 251	
44	축산리	152-2	도	도	63	63	농림지역	진영권	축산리 433-2	
45	축산리	152-3	전	답	1191	1191	보전관리지역	국민건강 보험공단		
46	축산리	152-6	전	도	155	155	농림지역	군산시		
47	축산리	153	전	잡	184	184	보전관리지역	국(건교부)		
48	축산리	154-1	전	잡	614	614	보전관리지역	국(재정경제부)		
49	축산리	154-2	임	잡	1454	1454	보전관리지역	임규석	임피면 축산리 7	
50	축산리	154-3	임	임	670	670	보전관리지역	국(국세청)		
51	축산리	154-6	임	도	40	40	보전관리지역	국(국세청)		
52	축산리	154-7	임	임	1188	1188	보전관리지역	한상재	축산리 35	

53	축산리	154-8	임	임	547	547	보전관리지역	김덕재	서수면 서수리 273-4	
54	축산리	154-9	임	임	586	586	보전관리지역	최우봉외1인	서울시 서대문구 남가좌동 358-2	
55	축산리	154-10	임	잡	108	108	보전관리지역	강병식		
56	축산리	154-11	임	임	477	477	보전관리지역	최부철	월하리 515-4	
57	축산리	154-14	전	잡	522	522	보전관리지역	신동옥	139-2	
58	축산리	154-15	전	잡	684	684	보전관리지역	국(재정경제부)		
59	축산리	154-16	임	임	2303	2303	보전관리지역	국(국세청)		
60	축산리	154-20	임	도	309	309	보전관리지역	국(재정경제부)		
61	축산리	154-21	임	도	147	147	보전관리지역	군산시		
62	축산리	154-22	임	도	121	121	보전관리지역	군산시		
63	축산리	154-23	임	도	141	141	보전관리지역	국(재정경제부)		
64	축산리	154-24	임	잡	145	145	보전관리지역	한국농어촌공사		
65	축산리	155	전	대	2070	2070	보전관리지역	오정일	축산리 139-2	
66	축산리	173	전	전	495	495	보전관리지역	김덕봉외2인	송파구 삼전동 97-10	
67	축산리	173-2	전	전	78	78	보전관리지역	한국농어촌공사		
68	축산리	532	도	대	5693	862	보전관리지역	국		
69	축산리	532-9	도	도	1369	660	보전관리지역	국(재정경제부)		
70	축산리	559-1	답	답	1788	1788	농림지역	김순엽	경장동 517-9	
71	축산리	559-2	답	답	1848	1848	농림지역	이일홍외1인	읍내리 328-3	
72	축산리	559-3	답	답	2103	2103	농림지역	이일홍	127-7	
73	축산리	559-4	답	답	1980	1980	농림지역	한상돈	임피면 읍내리 516-1	
74	축산리	559-5	답	답	1847	1847	농림지역	한상돈	임피면 읍내리 516-1	
75	축산리	560-1	답	답	1836	1836	농림지역	진호권	127-7	
76	축산리	560-2	답	답	1242	1242	농림지역 생산녹지지역	진호권	127-7	
77	축산리	560-3	답	답	2328	2328	농림지역 생산녹지지역	유덕수	읍내리 218-4	
78	축산리	560-4	답	답	2118	2118	농림지역 생산녹지지역	유덕수	읍내리 218-4	
79	축산리	560-5	답	답	2940	2940	농림지역 생산녹지지역	한연수	읍내리 516-1	
80	축산리	561-1	답	답	3612	3612	농림지역	임규진	읍내리 329	
81	축산리	561-2	답	답	3752	3752	농림지역 생산녹지지역	장인상	261	
82	축산리	562-1	답	답	2772	2772	농림지역	한상돈	읍내리 516-1	
83	축산리	562-2	답	답	3372	3372	농림지역	최현복	읍내리 299	

84	축산리	562-3	답	답	4067	4067	농림지역	최현복	읍내리 299	
85	축산리	562-4	답	답	1776	1776	농림지역	문두봉	전주 덕진구 송원동 2가 541-2 쌍용아파트 101-803호	
86	축산리	562-5	답	답	786	786	농림지역	박혜숙	141	
87	축산리	562-6	답	답	1182	1182	농림지역	최수풍	읍내리 271-1	
88	축산리	563-1	답	답	2568	2568	농림지역	이형식	읍내리 315	
89	축산리	563-2	답	답	3938	3938	농림지역	채응목	익산시 황등면 황등리 653-1	
90	축산리	563-3	답	답	3954	3954	농림지역	최전순	273	
91	축산리	563-4	답	답	3972	3972	농림지역	조남훈	읍내리 494-2	
92	축산리	563-5	답	답	4122	4122	농림지역	최수풍	읍내리 271-1	
93	축산리	563-6	답	답	1902	1902	농림지역	조철희	임피면 미원리 350	
94	축산리	563-7	답	답	2562	2562	농림지역	유영우	서수면 서수리 1263	
95	축산리	563-8	답	답	4007	4007	농림지역	유길준	서수면 서수리 1263	
96	축산리	563-9	답	답	1500	1500	농림지역	유길준	서수면 서수리 1263	
97	축산리	563-10	답	답	1214	1214	농림지역	국(재정경제부)		
98	축산리	563-11	답	답	1236	1236	농림지역	국(재정경제부)		
99	축산리	568-1	답	답	2284	2054	생산녹지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장화선외3인	익산시 마동 158-15삼호아파트 1-906	
100	축산리	568-2	답	답	2792	2792	생산녹지지역	장화선외3인	익산시 마동 158-15삼호아파트 1-906	
101	축산리	568-3	답	답	478	478	생산녹지지역	장화선외3인	익산시 마동 158-15삼호아파트 1-906	
102	축산리	568-4	답	답	1548	1548	생산녹지지역	김양순	읍내리 385	
103	축산리	568-5	답	답	738	738	생산녹지지역	송영자	읍내리 23-1	
104	축산리	568-6	답	답	2736	2736	생산녹지지역	송영자	읍내리 23-1	
105	축산리	568-7	답	답	2898	2898	생산녹지지역	송영자	읍내리 23-1	
106	축산리	568-8	답	답	4026	4026	생산녹지지역	송영자	읍내리 23-1	
107	축산리	568-9	답	답	4000	4000	생산녹지지역	김정호	서수면 서수리 1285	
108	축산리	568-10	답	답	4024	4024	농림지역 생산녹지지역	곽미영외3인	대전시 동구 홍도동 16-1 현암아파트 103동 402호	
109	축산리	568-11	답	답	1033	1033	농림지역	진병덕	축산리 356-1	
110	축산리	568-12	답	답	2941	2941	농림지역	진병덕	축산리 356-1	
111	축산리	568-13	답	답	1856	1856	농림지역	채수환	읍내리 48-4	
112	축산리	568-14	답	답	2187	2187	농림지역	채수환	읍내리 48-4	
113	축산리	569-1	답	잡	832	832	생산녹지지역	이용기	대야면 산월리 389	

114	축산리	569-2	답	답	911	911	생산녹지지역	송영자	읍내리 23-1	
115	축산리	569-3	답	답	2480	2480	생산녹지지역	송영자	읍내리 23-1	
116	축산리	569-4	전	전	2613	2613	생산녹지지역	이현진	동산동 1053-1 제일아파트	
117	축산리	569-5	답	답	2495	2495	생산녹지지역	이천식	읍내리 315	
118	축산리	569-6	답	답	994	994	생산녹지지역	이천식	읍내리 315	
119	축산리	569-7	답	답	1138	1138	생산녹지지역	한이성	읍내리 318	
120	축산리	569-8	답	답	2088	2088	생산녹지지역	한이성	읍내리 318	
121	축산리	569-9	답	답	1557	1557	생산녹지지역	한이성	읍내리 318	
122	축산리	569-10	답	답	1756	1756	생산녹지지역	송영자	읍내리 23-1	
123	축산리	569-11	답	답	1989	1989	농림지역 생산녹지지역	송영자	읍내리 23-1	
124	축산리	569-12	답	답	1665	1665	농림지역 생산녹지지역	장남중외2인	미원리 331	
125	축산리	569-13	답	답	498	498	농림지역	진병윤	인천시 남구 용현동 481	
126	축산리	569-14	답	답	2161	2161	농림지역	진병윤	인천시 남구 용현동 481	
127	축산리	570-1	답	답	2864	2864	농림지역	임규진	읍내리 329	
128	축산리	570-2	답	답	1200	1200	농림지역	채수환	읍내리 450-4	
129	축산리	570-3	답	답	4085	4085	농림지역	차상덕	읍내리 262	
130	축산리	570-4	답	답	4045	4045	농림지역	장인상	241-7	
131	축산리	570-5	답	답	1600	1600	농림지역	노성례	285-2	
132	축산리	570-6	답	답	2426	2426	농림지역	노성례	285-2	
133	축산리	570-7	답	답	1644	1644	농림지역	유선준	읍내리 25	
134	축산리	583	구	구	2243	2243	농림지역	국(농수산부)		
135	축산리	584	도	도	2611	1562	농림지역	국(농수산부)		
136	축산리	585	구	구	8776	3085	농림지역	국(농수산부)		
137	축산리	586	도	잡	370	370	보전관리지역	국(농수산부)		
138	축산리	587	도	잡	136	136	농림지역	국(농수산부)		
139	축산리	588	구	구	582	582	농림지역	국(농수산부)		

140	축산리	589	구	구	2296	2296	농림지역	국(농수산부)		
141	축산리	590	도	도	3742	2336	농림지역 생산녹지지역	국(농수산부)		
142	축산리	591	구	구	17555	7649	농림지역 생산녹지지역 제2종일반 주거지역	국(농수산부)		
143	축산리	592	구	구	1920	1804	생산녹지지역 제2종일반주거지 역	국(농수산부)		
144	축산리	593	도	도	1976	1973	농림지역 생산녹지지역	국(농수산부)		

○ 물건조서(지장물)

물 건 조 서 (총 괄)								
공익사업의 종류 및 명칭				임피 농공단지조성사업				
사업시행자		성명 또는 명칭		군산시장				
		주 소		전북 군산시 조촌동 888				
물건의 내역								
연 번	소 재 지	지번	물건의종 류	구조 및 규격	수량 (면적)	관 계 인		비 고
						성명또는명칭	주 소	
계								
1	축산리	97-1	주택		1채	최정민	평택시 팽성읍 합정리 157-6	
2	"	97-1	헛간		1채	최정민	평택시 팽성읍 합정리 157-6	
3	"	97-2	깨		76㎡	동상새마을회	읍내리 49-1	
4	"	101-1	고추		1605㎡	최정민	평택시 팽성읍 합정리 157-6	
5	"	101-3	잡종지		1351㎡	박용성	나운동751-5 신한파크 101호	
6	"	101-8	임야		607㎡	최영권	명산동 7-7	
7	"	101-9	묘		7기	한양조씨고부 공파농은종중	미원리 324	
8	"	102-1	묘		8기	고천형빈	미원리 350	
9	"	102-2	깨		1699㎡	오세봉외3인	서울 관악구 봉천동 881-28, 402호	
10	"	103-1	묘		13기	조성길외1인	미원리324	
11	"	104	지평선파렛트		1507㎡	장만	축산리 104	
12	"	106	주택		1채	장민	축산리 104	
13	"	106-1	옥염소		1090㎡	김해기	충남 태안군 이원면 내리 594-2	
14	"	106-1	닭		1090㎡	김해기	충남 태안군 이원면 내리 594-2	
15	"	106-1	가축시설		1090㎡	김해기	충남 태안군 이원면 내리 594-2	
16	"	109	잡종지		429㎡	조철희	임피면 미원리 350	
17	"	124-1	지평선파렛트		346㎡	김해기	충남 태안군 이원면 내리 594-2	
18	"	135-3	감나무		85㎡	오정일	축산리 139-2	
19	"	135-3	밤나무		85㎡	오정일	축산리 139-2	
20	"	136-3	대지		6㎡	오창성	축산리 35	
21	"	136-4	대지		10㎡	오창성	축산리 35	
22	"	136-5	소나무		4그루	오창성	축산리 35	
23	"	137-1	대지		71㎡	오정일	축산리 139-2	
24	"	137-2	대지		17㎡	오창성	축산리 35	
25	"	137-3	도로		22㎡	군산시	군산시 조촌동 888	
26	"	138-1	신대륙자원		474㎡	오정일	축산리 139-2	
27	"	138-3	도로		112㎡	강우현	읍내리 436	
28	축산리	138-4	도로		50㎡	오정일	축산리 139-2	
29	"	138-6	도로		373㎡	군산시	군산시 조촌동 888	
30	"	138-7	대지		84㎡	오정일	축산리 139-2	

31	"	139-1	대지		7㎡	오창성	축산리 35	
32	"	139-2	주택		1채	오정일	축산리 139-2	
33	"	139-2	대추		612㎡	오정일	축산리 139-2	
34	"	139-2	대과		612㎡	오정일	축산리 139-2	
35	"	139-2	콩		612㎡	오정일	축산리 139-2	
36	"	140-1	벼		1315㎡	오정일	축산리 139-2	
37	"	141	주택		2채	전복은행		
38	"	141	창고		1채	전복은행		
39	"	141	헛간		1채	전복은행		
40	"	142	벼		747㎡	오정일	축산리 139-2	
41	"	143-1	도로		155㎡	강병식		
42	"	143-2	자재야적장		4727㎡	군산시		
43	"	143-2	묘		10기	군산시		
44	"	143-4	묘		8기	노영자	군산시 대야면 보덕리 295-1	
45	"	143-4	고추		5289㎡	노영자	군산시 대야면 보덕리 295-1	
46	"	143-4	깨		5289㎡	노영자	군산시 대야면 보덕리 295-1	
47	"	143-4	배추		5289㎡	노영자	군산시 대야면 보덕리 295-1	
48	"	143-6	도로		609㎡	군산시		
49	"	145-1	벼		594㎡	정인창	축산리 189	
50	"	146-1	도로		7㎡	국(건설부)		
51	"	146-2	도로		7㎡	국(건설부)		
52	"	146-3	벼		2238㎡	박종호	축산리 189	
53	"	146-5	도로		134㎡	군산시		
54	"	147-2	벼		483㎡	정인창	축산리 189	
55	"	147-4	도로		2㎡	군산시		
56	"	152-1	벼		1031㎡	백정덕	읍내리 251	
57	"	152-2	도로		63㎡	진영권	축산리 433-2	
58	"	152-3	벼		1191㎡	국민건강보험공단		
59	"	152-6	도로		155㎡	군산시		
60	"	153	잡종지		184㎡	국(건교부)		
61	"	154-1	묘		2기	재정경제부		
62	"	154-1	비닐하우스		1동	재정경제부		
63	"	154-2	묘지		2기	임규석	임피면 축산리 7	
64	"	154-2	비닐하우스		2동	임규석	임피면 축산리 7	
65	축산리	154-2	이동화장실		1채	임규석	임피면 축산리 7	
66	"	154-2	컨테이너박스		1채	임규석	임피면 축산리 7	
67	"	154-3	묘지		3기	재정경제부		
68	"	154-6	도로		40㎡	재정경제부		
69	"	154-7	묘		5기	한상재	축산리 35	
70	"	154-8	묘		5기	김덕재	서수면 서수리 273-4	
71	"	154-9	임야		586㎡	최우봉외1인	서울시 서대문구 남가좌동 358-2	

72	"	154-10	잡종지		108㎡	강병식	
73	"	154-11	묘		1기	최무철	월하리 515-4
74	"	154-14	움막		1채	신동옥	축산리 139-2
75	"	154-14	잡종지		522㎡	신동옥	축산리 139-2
76	"	154-15	묘지		1기	국(재정경제부)	
77	"	154-16	잡종지		2303㎡	국(재정경제부)	
78	"	154-16	전		2303㎡	국(재정경제부)	
79	"	154-16	묘지		2기	국(재정경제부)	
80	"	154-20	도로		309㎡	국(재정경제부)	
81	"	154-21	도로		147㎡	군산시	
82	"	154-22	도로		121㎡	군산시	
83	"	154-23	도로		141㎡	국(재정경제부)	
84	"	154-24	잡종지		145㎡	한국농어촌공사	
85	"	155	신대륙자원		2070㎡	오정일	축산리 139-2
86	"	173	깨		495㎡	김덕봉외2인	송파구 삼전동 97-10
87	"	173-2	깨		78㎡	한국농어촌공사	
88	"	532	지평선파렛트		862㎡	국	
89	"	532-9	도로		660㎡	국(재정경제부)	
90	"	559-1	벼		1788㎡	김순엽	경장동 517-9
91	"	559-2	벼		1848㎡	이일홍외1인	읍내리 328-3
92	"	559-3	벼		2103㎡	이일홍	127-7
93	"	559-4	벼		1980㎡	한상돈	임피면 읍내리 516-1
94	"	559-5	벼		1847㎡	한상돈	임피면 읍내리 516-1
95	"	560-1	벼		1836㎡	진호권	127-7
96	"	560-2	벼		1242㎡	진호권	127-7
97	"	560-3	벼		2328㎡	유덕수	읍내리 218-4
98	"	560-4	벼		2118㎡	유덕수	읍내리 218-4
99	"	560-5	벼		2940㎡	한연수	읍내리 516-1
100	"	561-1	벼		3612㎡	임규진	읍내리 329
101	"	561-2	벼		3752㎡	장인상	261
102	축산리	562-1	벼		2772㎡	한상돈	읍내리 516-1
103	"	562-2	벼		3372㎡	최현복	읍내리 299
104	"	562-3	벼		4067㎡	최현복	읍내리 299
105	"	562-4	벼		1776㎡	문두봉	덕진구 송천동 2가 541-2 쌍용아파트 101-803
106	"	562-5	벼		786㎡	박혜숙	141
107	"	562-6	벼		1182㎡	최수풍	읍내리 271-1
108	"	563-1	벼		2568㎡	이형식	읍내리 315
109	"	563-2	벼		3938㎡	채응목	익산시 황등면 황등리 653-1
110	"	563-3	벼		3954㎡	최전순	273
111	"	563-4	벼		3972㎡	조남훈	읍내리 494-2
112	"	563-5	벼		4122㎡	최수풍	읍내리 271-1
113	"	563-6	벼		1902㎡	조철희	임피면 미원리 350

114	"	563-7	벼		2562㎡	유영우	서수면 서수리 1263	
115	"	563-8	벼		4007㎡	유길준	서수면 서수리 1263	
116	"	563-9	벼		1500㎡	유길준	서수면 서수리 1263	
117	"	563-10	벼		1214㎡	국(재정경제부)		
118	"	563-11	벼		1236㎡	국(재정경제부)		
119	"	568-1	벼		2054㎡	장화선외3인	익산시 마동 158-15 삼호아파트 1-906	
120	"	568-2	벼		2792㎡	장화선외3인	익산시 마동 158-15 삼호아파트 1-906	
121	"	568-3	벼		478㎡	장화선외3인	익산시 마동 158-15 삼호아파트 1-906	
122	"	568-4	벼		1548㎡	김양순	읍내리 385	
123	"	568-5	벼		738㎡	송영자	읍내리 23-1	
124	"	568-6	벼		2736㎡	송영자	읍내리 23-1	
125	"	568-7	벼		2898㎡	송영자	읍내리 23-1	
126	"	568-8	벼		4026㎡	송영자	읍내리 23-1	
127	"	568-9	벼		4000㎡	김경호	서수면 서수리 1285	
128	"	568-10	벼		4024㎡	곽미영외3인	대전시 동구 홍도동 16-1 현암아파트 103동 402호	
129	"	568-11	벼		1033㎡	진병덕	축산리 356-1	
130	"	568-12	벼		2941㎡	진병덕	축산리 356-1	
131	"	568-13	벼		1856㎡	채수환	읍내리 48-4	
132	"	568-14	벼		2187㎡	채수환	읍내리 48-4	
133	"	569-1	묘목		832㎡	이용기	대야면 산월리 389	
134	"	569-2	벼		911㎡	송영자	읍내리 23-1	
135	"	569-3	벼		2480㎡	송영자	읍내리 23-1	
136	"	569-4	콩		2613㎡	이현진	동산동 1053-1 제일아파트	
137	"	569-5	벼		2495㎡	이천식	읍내리 315	
138	"	569-6	벼		994㎡	이천식	읍내리 315	
139	"	569-7	벼		1138㎡	한이성	읍내리 318	
140	축산리	569-8	벼		2088㎡	한이성	읍내리 318	
141	"	569-9	벼		1557㎡	한이성	읍내리 318	
142	"	569-10	벼		1756㎡	송영자	읍내리 23-1	
143	"	569-11	벼		1989㎡	송영자	읍내리 23-1	
144	"	569-12	벼		1665㎡	장남중외2인	미원리 331	
145	"	569-13	벼		498㎡	진병윤	인천시 남구 용현동 481	
146	"	569-14	벼		2161㎡	진병윤	인천시 남구 용현동 481	
147	"	570-1	벼		2864㎡	임규진	읍내리 329	
148	"	570-2	벼		1200㎡	채수환	읍내리 450-4	
149	"	570-3	벼		4085㎡	차상덕	읍내리 262	
150	"	570-4	벼		4045㎡	장인상	241-7	
151	"	570-5	벼		1600㎡	노성래	285-2	
152	"	570-6	벼		2426㎡	노성래	285-2	
153	"	570-7	벼		1644㎡	유선준	읍내리 25	
154	"	583	구거		2243㎡	국(농수산부)		
155	"	584	도로		1562㎡	국(농수산부)		

156	"	585	구거		3085㎡	국(농수산부)		
157	"	586	잡종지		370㎡	국(농수산부)		
158	"	587	잡종지		136㎡	국(농수산부)		
159	"	588	구거		582㎡	국(농수산부)		
160	"	589	수로관	B=0.5, H=0.5	2296㎡	국(농수산부)		
161	"	590	도로		2336㎡	국(농수산부)		
162	"	591	구거 컨테이너박스		7649㎡	국(농수산부)		
163	"	592	라이닝		1804㎡	국(농수산부)		
164	"	593	도로		1973㎡	국(농수산부)		

[변경후]

○ 토지 세목조서

토 지 조 서 (총 괄)											
공익사업의 종류 및 명칭				군산 임피농공단지조성사업							
사업인정의 근거 및 고시일											
사업시행자	성명 또는 명칭			군산시장							
	주 소			전북 군산시 시청로 17							
토지소유자	성명 또는 명칭			144필지							
	주 소										
토지의 내역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 지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비고
				대장 면적	편입 면적	성명또는명칭	주 소	구 분	성 명	주 소	
계				263,128	239,187						
1	축산리	97-1	대	342	342	최정민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함정리 157-6				
2	축산리	97-2	답	76	76	동상새마을회	읍내리 491-1				
3	축산리	101-1	임	1605	1605	최정민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함정리 157-6				
4	축산리	101-3	전	1351	1351	박용성	나운동 751-5 신한파크101호				
5	축산리	101-8	임	6075	6075	최영권	명산동 7-7				
6	축산리	101-9	임	4471	4471	한국농어촌공사					
7	축산리	102-1	묘	516	516	고천형빈	임피면 미원리 350				
8	축산리	102-2	전	1699	1699	오세봉외3인	서울 관악구 봉천동 881-28, 402호	근저 당권	농업진흥 조합중앙 회	서울 중구 충정로1가 75	
9	축산리	103-1	임	11831	11831	한국농어촌공사					
10	축산리	104	창	1507	1507	장민	축산리 104	근저 당권	임피면 읍내리 480-5	군산시 임피면 읍내리480-5	
11	축산리	106	대	659	659	장민	축산리 104	근저 당권	임피면 읍내리 480-5	군산시 임피면 읍내리480-5	
12	축산리	106-1	답	1090	1090	김혜기	충남 태안군 이원면 내리 594-2	근저 당권	임피면 읍내리 480-5	군산시 임피면 읍내리480-5	
13	축산리	109	답	429	429	한국농어촌공사					
14	축산리	124-1	답	346	346	김혜기	충남 태안군 이원면 내리 594-2				
15	축산리	135-3	답	85	85	한국농어촌공사					
16	축산리	136-3	도	6	6	오창성	축산리 35				
17	축산리	136-4	도	10	10	오창성	축산리 35				
18	축산리	136-5	도	18	18	오창성	축산리 35				

연 번	소 재 지	지번 (당초 지번)	지목	전체 면적	편입 면적	토지소유자		이 해 관 계 인			비고
						성명또는명칭	주소	구분	성명	주소	
19	축산리	137-1	대	71	71	한국농어촌공사					
20	축산리	137-2	도	17	17	오창성	축산리 35				
21	축산리	137-3	대	22	22	한국농어촌공사					
22	축산리	138-1	전	474	474	한국농어촌공사					
23	축산리	138-3	도	112	112	강우현	임피면 읍내리 436				
24	축산리	138-4	대	50	50	한국농어촌공사					
25	축산리	138-6	전	373	373	한국농어촌공사					
26	축산리	138-7	전	84	84	한국농어촌공사					
27	축산리	139-1	도	7	7	오창성	임피면 축산리 35				
28	축산리	139-2	대	612	612	한국농어촌공사					
29	축산리	140-1	답	1315	1315	한국농어촌공사					
30	축산리	141	대	1385	1385	한국농어촌공사					
31	축산리	142	전	747	747	한국농어촌공사					
32	축산리	143-1	임	155	155	강병식					
33	축산리	143-2	임	4727	4727	이용득	서수면 서수리 447	압류	군산시	군산시 시청로 17	
34	축산리	143-4	임	5289	5289	노영자	군산시 대야면 보덕리 295-1				
35	축산리	143-6	임	609	609	한국농어촌공사					
36	축산리	145-1	답	594	594	한국농어촌공사					
37	축산리	146-1	도	7	7	국(건설부)					
38	축산리	146-2	도	7	7	국(건설부)					
39	축산리	146-3	답	2238	2238	한국농어촌공사					
40	축산리	146-5	답	134	134	한국농어촌공사					
41	축산리	147-2	답	483	483	한국농어촌공사					
42	축산리	147-4	답	2	2	한국농어촌공사					
43	축산리	152-1	전	1031	1031	백정덕	읍내리 251	소유 권이 전청 구권 가등 기	김덕봉 민영순	서울 송파구 문정로83레미안@ 103-1401호 서울강서구 방화동 589-3 신성연립 다동 203호	
44	축산리	152-2	도	63	63	한국농어촌공사					
45	축산리	152-3	전	1191	1191	백정덕	읍내리 251	소유 권이 전청 구권 가등 기	김덕봉 민영순 국민경 강보험 공단	서울 송파구 문정로83레미안@ 103-1401호 서울강서구 방화동 589-3 신성연립 다동 203호 서울시 마포구 염리동 168-9	

46	축산리	152-6	전	155	155	한국농어촌공사					
47	축산리	153	전	184	184	국(건교부)					
48	축산리	154-1	전	614	614	국(재정경제부)					
49	축산리	154-2	임	1454	1454	한국농어촌공사					
50	축산리	154-3	임	670	670	국(재정경제부)					
51	축산리	154-6	임	40	40	국(재정경제부)					
52	축산리	154-7	임	1188	1188	한국농어촌공사					
53	축산리	154-8	임	547	547	김덕재	서수면 서수리 273-4				
54	축산리	154-9	임	586	586	한국농어촌공사					
55	축산리	154-10	임	108	108	강병식					
56	축산리	154-11	임	477	477	최무철	임피면 월하리 515-4				
57	축산리	154-14	전	522	522	한국농어촌공사					
58	축산리	154-15	전	684	684	국(재정경제부)					
59	축산리	154-16	임	2303	2303	국(재정경제부)					
60	축산리	154-20	임	309	309	국(재정경제부)					
61	축산리	154-21	임	147	147	한국농어촌공사					
62	축산리	154-22	임	121	121	한국농어촌공사					
63	축산리	154-23	임	141	141	국(재정경제부)					
64	축산리	154-24	임	145	145	한국농어촌공사					
65	축산리	155	전	2070	2070	한국농어촌공사					
66	축산리	173	전	495	495	백정덕	임피면 읍내리 251	소유권이 전청구권 가등기	김덕봉 민영순	서울 송파구 문정로83레미안@103-1401호 서울강서구 방화동 589-3 신성연립 다동 203호	
67	축산리	173-2	전	78	78	한국농어촌공사					
68	축산리	532	도	5693	862	국					
69	축산리	532-9	도	1369	660	국(재정경제부)					
70	축산리	559-1	답	1788	1788	한국농어촌공사					
71	축산리	559-2	답	1848	1848	한국농어촌공사					
72	축산리	559-3	답	2103	2103	한국농어촌공사					
73	축산리	559-4	답	1980	1980	한상돈	임피면 읍내리 516-1	근저당권	동군산농업협동조합	군산시 임피면 읍내리 223-5	
74	축산리	559-5	답	1847	1847	한상돈	임피면 읍내리 516-1	근저당권	동군산농업협동조합	군산시 임피면 읍내리 223-5	
75	축산리	560-1	답	1836	1836	한국농어촌공사					

76	축산리	560-2	답	1242	1242	한국농어촌공사				
77	축산리	560-3	답	2328	2328	한국농어촌공사				
78	축산리	560-4	답	2118	2118	한국농어촌공사				
79	축산리	560-5	답	2940	2940	한연수	읍내리 516-1			
80	축산리	561-1	답	3612	3612	한국농어촌공사				
81	축산리	561-2	답	3752	3752	한국농어촌공사				
82	축산리	562-1	답	2772	2772	한상돈	읍내리 516-1			
83	축산리	562-2	답	3372	3372	한국농어촌공사				
84	축산리	562-3	답	4067	4067	한국농어촌공사				
85	축산리	562-4	답	1776	1776	한국농어촌공사				
86	축산리	562-5	답	786	786	한국농어촌공사				
87	축산리	562-6	답	1182	1182	한국농어촌공사				
88	축산리	563-1	답	2568	2568	한국농어촌공사				
89	축산리	563-2	답	3938	3938	한국농어촌공사				
90	축산리	563-3	답	3954	3954	한국농어촌공사				
91	축산리	563-4	답	3972	3972	조남훈	읍내리 494-2	근저 당권	임피농 업협동 조합	군산시 임피면 읍내리 223-5
92	축산리	563-5	답	4122	4122	한국농어촌공사				
93	축산리	563-6	답	1902	1902	한국농어촌공사				
94	축산리	563-7	답	2562	2562	유영우	서수면 서수리 1263			
95	축산리	563-8	답	4007	4007	한국농어촌공사				
96	축산리	563-9	답	1500	1500	한국농어촌공사				
97	축산리	563-10	답	1214	1214	국(재정경제원)				
98	축산리	563-11	답	1236	1236	국(재정경제원)				
99	축산리	568-1	답	2284	2284	한국농어촌공사				
100	축산리	568-2	답	2792	2792	한국농어촌공사				
101	축산리	568-3	답	478	478	한국농어촌공사				
102	축산리	568-4	답	1548	1548	한국농어촌공사				

103	축산리	568-5	답	738	738	송영자	읍내리 23-1				
104	축산리	568-6	답	2736	2736	송영자	읍내리 23-1	임차 권설 경	한국농 어촌공 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105	축산리	568-7	답	2898	2898	송영자	읍내리 23-1	임차 권설 경	한국농 어촌공 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106	축산리	568-8	답	4026	4026	송영자	읍내리 23-1	임차 권설 경	한국농 어촌공 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107	축산리	568-9	답	4000	4000	한국농어촌공사					
108	축산리	568-10	답	4024	4024	한국농어촌공사					
109	축산리	568-11	답	1033	1033	진병덕	축산리 356-1				
110	축산리	568-12	답	2941	2941	진병덕	축산리 356-1				
111	축산리	568-13	답	1856	1856	한국농어촌공사					
112	축산리	568-14	답	2187	2187	한국농어촌공사					
113	축산리	569-1	답	832	832	한국농어촌공사					
114	축산리	569-2	답	911	911	송영자	읍내리 23-1				
115	축산리	569-3	답	2480	2480	송영자	읍내리 23-1				
116	축산리	569-4	전	2613	2613	한국농어촌공사					
117	축산리	569-5	답	2495	2495	한국농어촌공사					
118	축산리	569-6	답	994	994	한국농어촌공사					
119	축산리	569-7	답	1138	1138	한국농어촌공사					
120	축산리	569-8	답	2088	2088	한국농어촌공사					
121	축산리	569-9	답	1557	1557	한국농어촌공사					
122	축산리	569-10	답	1756	1756	송영자	읍내리 23-1				
123	축산리	569-11	답	1989	1989	송영자	읍내리 23-1				
124	축산리	569-12	답	1665	1665	한국농어촌공사					
125	축산리	569-13	답	498	498	한국농어촌공사					
126	축산리	569-14	답	2161	2161	한국농어촌공사					
127	축산리	570-1	답	2864	2864	한국농어촌공사					
128	축산리	570-2	답	1200	1200	한국농어촌공사					
129	축산리	570-3	답	4085	4085	차상덕	읍내리 262				

130	축산리	570-4	답	4045	4045	한국농어촌공사				
131	축산리	570-5	답	1600	1600	한국농어촌공사				
132	축산리	570-6	답	2426	2426	한국농어촌공사				
133	축산리	570-7	답	1644	1644	한국농어촌공사				
134	축산리	583	구	2243	2243	국(농수산부)				
135	축산리	584	도	2611	1562	국(농수산부)				
136	축산리	585	구	8776	3085	국(농수산부)				
137	축산리	586	도	370	370	국(농수산부)				
138	축산리	587	도	136	136	국(농수산부)				
139	축산리	588	구	582	582	국(농수산부)				
140	축산리	589	구	2296	2296	국(농수산부)				
141	축산리	590	도	3742	2336	국(농수산부)				
142	축산리	591	구	17555	7649	국(농수산부)				
143	축산리	592	구	1920	1804	국(농수산부)				
144	축산리	593	도	1976	1973	국(농수산부)				

○ 물건조서(지장물)

물 건 조 서 (총 괄)								
공익사업의 종류 및 명칭			임피 농공단지조성사업					
사업시행자		성명 또는 명칭		군산시장				
		주 소		전북 군산시 시청로 17				
물건의 내역								
연 번	소 재 지	지번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수량 (면적)	관 계 인		비 고
						성명또는명칭	주소	
계								
1	축산리	97-1	주택	목조스레트	44㎡	최정민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송학3리168-9	
2			가차	목조스레트	6㎡	〃	〃	
3			까데기	철파이프스레트	13.2㎡	〃	〃	
4			창고및 화장실	목조스레트 (일부블록)	12㎡	〃	〃	
5			우물		1식	〃	〃	
6			바닥	콘크리트및 보도블록	58㎡	〃	〃	
7			소나무		22주	〃	〃	
8			장미		1주	〃	〃	
9			감나무		2주	〃	〃	
10			꽃사과나무		1주	〃	〃	
11			뽕나무		11주	〃	〃	
12			엄나무		3주	〃	〃	
13	축산리	97-2	깨		76㎡	동상새마을회	군산시 임피면 읍내리 491-1	
14	축산리	101-1	고추		1,605㎡	최정민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송학3리168-9	
15			뽕나무		9주	〃	〃	
16			감나무		4주	〃	〃	
17			대추나무		9주	〃	〃	
18			사과나무		2주	〃	〃	
19			포도나무		5주	〃	〃	
20			배나무		2주	〃	〃	
21			복숭아나무		3주	〃	〃	
22			석류나무		1주	〃	〃	
23			자두나무		11주	〃	〃	
24			뽕나무		4주	〃	〃	
25			헛개나무		5주	〃	〃	
26	축산리	101-1	단풍나무		1주	최정민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송학3리168-9	

27		101-3	대문	철재	1식	〃	〃	
28			고추등		1,351m ²	박용성	군산시 수송동 한라비발디2단지201/1902	
29			감나무		629주	〃	〃	
30			뽕나무		14주	〃	〃	
31			묘지		단장 2기	강홍찬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 925번지 2층	
32	축산리	101-8	느티나무		3주	최영권	군산시 명산동 7-7번지	
33			뽕나무		5주	〃	〃	
34			소나무		2주	〃	〃	
35			밤나무		12주	〃	〃	
36			감나무		1주	〃	〃	
37	축산리	101-9	묘지		단장 5기 합장 2기	한영조씨고부공파 농은종중	군산시 미원리 324	
38	축산리	102-1	묘지		단장 1기 합장 7기	오세봉외3인	서울 관악구 봉천동 881-28번지 402호	
39			둘레석		8식	〃	〃	
40			비석		8식	〃	〃	
41			상석		1식	〃	〃	
42			항로석		1식	〃	〃	
43			망주석		2식	〃	〃	
44			배수관	350mm*350mm ㄱ형콘크리트	60M	〃	〃	
45			잔디		50m ²	〃	〃	
46			황금측백		3주	〃	〃	
47			철쭉		3주	〃	〃	
48			뽕나무		25주	〃	〃	
49	축산리	102-2	사과나무		180주	〃	〃	
50			배나무		156주	〃	〃	
51			매실나무		82주	〃	〃	
52			대추나무		10주	〃	〃	
53			감나무		22주	〃	〃	
54			깨		1,699m ²			

55	축산리	103-1	묘지		단장 7기	조성국	경기도 분당시 분당구 야탑동 목련마을 성환빌라 207/401	
56			묘지		단장 6기	조성길	군산시 임피면 미원리 324번지	
57			둘레석		2식	조성길외1	군산시 임피면 미원리 324번지	
58			비 석		4식	"	"	
59			상석		1식	"	"	
60	축산리	104.106 106-1,124-1	울타리	철재웬스	60M	장민	군산시 임피면 축산리 124	
61			대문	철재	1식	"	"	
62			창고1	철골강판	162m ²	"	"	
63			창고2	철골강판	162m ²	"	"	
64			창고3	철골강판	90m ²	"	"	
65			까데기	철파이프합석	40m ²	"	"	
66			창고4	철재컨테이너	5m ²	"	"	
67			창고5	목조목재합판	1식	"	"	
68			주택	조적조(시멘트 블럭), 샌드위치판넬(2층부분 및 심야전기포함)	108m ²	"	"	
69			가추	새시조판넬	39m ²	"	"	
70			사무실	조적조슬래브	27m ²	"	"	
71			차양	목조스레트	5m ²	"	"	
72			창고6	경량철골판넬	27m ²	"	"	
73			바닥1	자갈	1,116m ²	"	"	
74			바닥2	콘크리트	1,000m ²	"	"	
75			바닥3	잔디및화강석	70m ²	"	"	
76			잔디		165.3m ²	"	"	
77			수도설비	250mm고무파이 프,수도꼭지포 함	1식	"	"	
78			울타리	철파이프 (축산용)	130M	"	"	
79			계사	철파이프 스레트	6m ²	"	"	
80			축사	철재스레트	11.6m ²	"	"	
81			물탱크설비 공작물	철파이프 콘크리트 물탱크	1식	"	"	
82			관정	식수용	1식	"	"	
83			화단	견치석	1식	"	"	
84			배수관1	100mm PVC	29M	"	"	
85	축산리	104.106 106-1,124-1	배수관2	300mm 콘크리트	71M	장민	군산시 임피면 축산리 124	

86			배수관3	800*300mm ㄷ자형콘 크리트	90M	〃	〃	
87			영업보상	지평선파렛 트(제품,설비 ,간판등포함)	1식	〃	〃	
88			은행나무		2주	〃	〃	
89			뽕나무		10주	〃	〃	
90			매실나무		8주	〃	〃	
91			포도나무		2주	〃	〃	
92			모과나무		3주	〃	〃	
93			살구나무		1주	〃	〃	
94			자두나무		1주	〃	〃	
95			단감나무		2주	〃	〃	
96			대봉시감		8주	〃	〃	
97			밤나무		2주	〃	〃	
98			꾸지봉		1주	〃	〃	
99			대추나무		7주	〃	〃	
100			석류나무		2주	〃	〃	
101			헛개나무		1주	〃	〃	
102			두충나무		1주	〃	〃	
103			목단		3주	〃	〃	
104			보리수		1주	〃	〃	
105			오가피		16주	〃	〃	
106			구기자		6주	〃	〃	
107			꽃사과나무		1주	〃	〃	
108			앵두나무		1주	〃	〃	
109			엄나무		2주	〃	〃	
110			느릅나무		11주	〃	〃	
111			골담초		8주	〃	〃	
112			남천		1주	〃	〃	
113			사철나무		30주	〃	〃	
114			옷나무		2주	〃	〃	
115			자귀나무		1주	〃	〃	
116			두릅나무		2주	〃	〃	
117			벗나무		1주	〃	〃	
118			느티나무		85주	〃	〃	
119			설토화		3주	〃	〃	
120	축산리	104.106 106-1,124-1	명자나무		11주	장 민	군산시 임피면 축산리 124	
121			개나리		3주	〃	〃	
122			황금측백		1주	〃	〃	
123			라일락		3주	〃	〃	
124			철쭉		69주	〃	〃	

125			홍단풍		1주	〃	〃	
126			청단풍		1주	〃	〃	
127			백일홍		1주	〃	〃	
128			눈향		2주	〃	〃	
129			조팝나무		3주	〃	〃	
130			소나무(분재)		1주	〃	〃	
131			주목		5주	〃	〃	
132			유카		11주	〃	〃	
133			동백(소)		14주	〃	〃	
134			동백(대)		18주	〃	〃	
135			이슬라엘동백		1주	〃	〃	
136			화살나무		4주	〃	〃	
137			수국		5주	〃	〃	
138			회양목		20주	〃	〃	
139			작약		6주	〃	〃	
140	축산리	137-1,137-2, 138-3,138-4, 138-7,139-1, 139-2	주택	적벽돌슬라브 (베란다,계단, 심야보일러, 태양열온수포 합)	105.3㎡	한국농어촌공사		
141			비닐하우스	철재	26.1㎡	〃		
142			다용도실	적벽돌슬라브 (옥상계단포함)	47.9㎡	〃		
143			까데기	철파이프 스레트	6.7㎡	〃		
144			창고	적벽돌스레트	41.6㎡	〃		
145			바닥	콘크리트	240.9㎡	〃		
146			담장	적벽돌	88.8M	〃		
147			대문	철재	2식	〃		
148			화단		2식	〃		
149			건사	목재스레트	1식	〃		
150			계사울타리	철파이프	10M	〃		
151			건사	철재	5.2㎡	〃		
152			설토화		2주	〃		

153	축산리	137-1,137-2, 138-3,138-4, 138-7,139-1, 139-2	라일라		2주	한국농어촌공사		
154			자두나무		2주	〃		
155			단풍나무		2주	〃		
156			소나무		6주	〃		
157			감나무		2주	〃		
158			엄나무		1주	〃		
159			철쭉		13주	〃		
160			자목련		1주	〃		
161			매실나무		1주	〃		
162			동백나무		1주	〃		
163			포도나무		3주	〃		
164			팽팽나무		2주	〃		
165			피라칸사스		1주	〃		
166			드릅나무		1주	〃		
167			선주목		3주	〃		
168			소나무		2주	〃		
169			철쭉		7주	〃		
170			동백나무		1주	〃		
171			남천		1속	〃		
172			주목		2주	〃		
173			은사철나무		1주	〃		
174			산당화		1속	〃		
175			자목련		1주	〃		
176			장 미		1주	〃		
177			사철나무		1주	〃		
178			백목련		1주	〃		
179			산딸나무		1주	〃		
180			철쭉		1속	〃		
181			황금촉백		1주	〃		
182			화살나무		1주	〃		
183			감나무		2주	〃		
184			구기자		5M	〃		
185			보리수		1주	〃		
186			등나무		1주	〃		

연 번	소재지	지번	물건의종류	구조 및 규격	수량 (면적)	관 계 인		비 고
						성명또는명칭	주소	
187	축산리	140-1,135-3	소나무		4주	한국농어촌공사		
188			모과나무		4주	"		
189			벚나무		1주	"		
190			살구나무		1주	"		
191			감나무		9주	"		
192			탱자울타리		7M	"		
193			사철나무		1속	"		
194			밤나무		2주	"		
195			매실나무		3주	"		
196			백일홍		2주	"		
197			복숭아나무		1주	"		
198			꽃봉숭아 나무		2주	"		
199			석류나무		1주	"		
200			측백나무		3주	"		
201			뽕나무		3주	"		
202	축산리	140-1	벼		1,315			
203	축산리	141	창고	목조스레트	31m ² m ²	한국농어촌공사		
204			주택	조적조 기와강판	93.8m ²	한국농어촌공사		
205			까데기	철파이프 합석	15m ²	"		
206			창고	조립식판넬	28.4m ²	"		
207			담장	조립식	18M	"		
208			바닥	자갈,콘크리 트보도블럭	96m ²	"		
209			창고	철파이프 강판지붕	2.5m ²	"		
210			냉장고		1식	"		
211			장독대		10m ²	"		
212			외등		2개	"		
213			화단		2식	"		
214			울타리	측백	12M	"		
215			울타리	사철나무 회양목	10M	"		
216			잔디		21m ²	"		
217			옥향		2주	"		
218			동백		1주	"		
219			가이즈카 향나무		4주	"		

연 번	소재지	지번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수량 (면적)	관 계 인		비 고
						성명또는명칭	주소	
220	축산리	141	사철나무		3주	한국농어촌공사		
221			대추나무		24주	"		
222			감나무		3주	"		
223			단풍나무		1주	"		
224			황금측백		1주	"		
225			주택	시멘트 블록합석	54.3㎡	한국농어촌공사		
226			보일러실	블럭스레트	3.8㎡	"		
227			까데기	철파이프합석	17.3㎡	"		
228			창고	블럭스레트	17.5㎡	"		
229			화장실	블럭스레트	6.9㎡	"		
230			견사	목조스레트	1식	"		
231			수도간	콘크리트	1식	"		
232			관정	식수용	1식	"		
233			우물		1식	"		
234			담장	블록,조립식	30M	"		
235			감나무		1주	"		
236			엄나무		1주	"		
237			단감나무		1주	"		
238			동력		1식	최상규	군산시 임피면 축산리 141	
239	축산리	142	벼		747㎡	"	"	
240	축산리	143-2	묘지		단장 5기	이형탁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1가 삼천하이츠 102동 302호	
241			묘지		단장 1기	최호엽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1가640 남양황실@2동 301호	
242			울타리 대문포함	철파이프 강판	78M	"	"	
243			묘지		단장 3기	이 철	전남 진도군 고군면 고성리 292-1	
244			자재	거푸집 철파이프등	1식	최호엽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1가640 남양황실@2동 301호	
245			비석		3식	이형탁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1가 삼천하이츠 102동 302호	
246			상석		3식	"	"	
247			항록석		3식	"	"	
248			황금측백		8주	"	"	
249	축산리	143-4	고추등		826㎡	노영자	군산시 대야면 보덕리 295-1	
250			망주석		2식	"	"	

연 번	소재지	지번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수량 (면적)	관 계 인		비 고
						성명또는명칭	주소	
251	축산리	143-4	상석		4식	노영자	군산시 대야면 보덕리 295-1	
252			향로석		4식	"	"	
253			황금촉백		3주	"	"	
254			묘지		단장 6기 합장 2기	"	"	
255	축산리	145-1	벼		594m ²	정인창	군산시 임피면 축산리 189	
256	축산리	146-3	벼		2,238m ²	박종호	군산시 임피면 축산리 189	
257	축산리	147-2	벼		483m ²	정인창	군산시 임피면 축산리 189	
258	축산리	152-1	벼		1,031m ²	백정덕	군산시 임피면 읍내리 251번지	
259	축산리	152-3	벼		1,191m ²	"	"	
260	축산리	153	고추		184m ²	국(건교부)		
261	축산리	154-1	묘지		단상 2기	이종일	군산시 구암동 250-3번지	
262			비닐하우스	철재	9m ²	한중훈	군산시 미룡동 440-1	
263			촉백나무	묘지수목	4주	임규석	군산시 임피면 축산리 7	
264			철 쪽	묘지수목	3주	"	"	
265	축산리	154-2	하우스1	철재	81.8m ²	한중훈	군산시 미룡동 440-1	
266			하우스2	철재	79.2m ²	"	"	
267			사무실	철재컨테이너	1식	"	"	
268			화장실	이동식 FRP	1식	"	"	
269			자재	목재	1식	"	"	
270			적벽돌제조기	레일포함	1식	"	"	
271			전기장치	상상동력 6KW	1식	"	"	
272	축산리	154-3	묘지		단상1기	임규석	서울 용산구 후암동 114-12	
273			묘지		단상 3기	오정일	군산시 임피면 축산리 139-1	
274		154-4	묘지		단상1기	임규석	서울 용산구 후암동 114-12	

연 번	소재지	지번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수량 (면적)	관 계 인		비 고
						성명또는명칭	주소	
275	축산리	154-7	묘지		단상 6기	한중훈	군산시 임피면 읍내리 160약탕골찜질방	
276	축산리	154-8	묘지		단상 4기 합장 1기	김덕재	군산시 서수면 서수리 273-4	
277	축산리	154-9	묘지		단상 2기	최일문	군산시 경암동 635-19	
278	축산리	154-11	묘지		단상 1기	최무철	익산시 중앙동3가 144-10	
279			백일홍		251주	"	"	
280			밤나무		5주	"	"	
281	축산리	154-14	옻막	목재	1식	임규석	서울 용산구 후암동 114-12	
282			무궁화		4주	이종일	군산시 임피면 축산리 154-14	
283			소나무		2주			
284			밤나무		41주			
285			고추		522m ²	신동욱	익산시 선화로33길 10	
286	축산리	154-15	고추		684m ²	(국)재정경제부		
287			묘지		단상 1기	이종일	군산시 구암동 250-3	
288	축산리	154-16	묘지		단상 2기	오재준	강원도 원주시 단계동 812-10 201호	
289			매실나무		250주	장영수	익산시 합라면 신등리 759-10	
290			은행나무		250주	"	"	
291			오가피		1주	"	"	
292	축산리	154-23	관정	식수용 (관정사포함)	1식	한국농어촌공사		
293	축산리	138-1 155	주택(숙소)	조립식판넬	32.2m ²	한국농어촌공사		
294			사무실1	철재컨테이너	27m ²	"		
295			세면장	조립식판넬	7.5m ²	"		
296			까데기	판넬	1식	"		
297			작업장	철파이프 판넬	86.4m ²	"		
298			사무실2	철재컨테이너	24m ²	"		
299			창고		18m ²	"		
300			담장	철파이프 강관	80M	"		
301			대문	철재대문	1식	"		
302			바닥	콘크리트	164m ²	"		
303			관정	식수용	1식	"		
304			영업보상	신대륙자원 (자재,고철,목재 간판등포함)	1식	"		
305			계근대	철재	1식	"		
306			감나무		1주	"		
307	축산리	173	벼		495m ²	백정덕	군산시 임피면 읍내리 251	
308	축산리	173-2	콩		78m ²	한국농어촌공사		

연 번	소재지	지번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수량 (면적)	관 계 인		비 고
						성명또는명칭	주소	
309	축산리	559-1	벼		1,788㎡	김순엽	군산시 경장동 517-9	
310	축산리	559-2	벼		1,848㎡	"	"	
311	축산리	559-3	벼		2,103㎡	이일홍	군산시 임피면 읍내리 328-3	
312	축산리	559-4	벼		1,980㎡	한상돈	군산시 임피면 읍내리 516-1	
313	축산리	559-5	벼		1,847㎡	"	"	
314	축산리	560-1	벼		1,836㎡	진호권	군산시 임피면 축산리 127-7	
315	축산리	560-2	벼		1,242㎡	"	"	
316	축산리	560-3	벼		2,328㎡	유덕수	군산시 임피면 읍내리 218-4	
317	축산리	560-4	벼		2,118㎡	"	"	
318	축산리	560-5	벼		2,940㎡	한연수	군산시 임피면 읍내리 516-1	
319	축산리	561-1	벼		3,612㎡	임규진	군산시 임피면 읍내리 329	
320	축산리	561-2	벼		3,752㎡	장인상	군산시 임피면 축산리 261	
321	축산리	562-1	벼		2,772㎡	한상돈	군산시 임피면 읍내리 516-1	
322	축산리	562-2	벼		3,372㎡	최현복	군산시 임피면 읍내리 299	
323	축산리	562-3	벼		4,067㎡	"	"	
324	축산리	562-4	벼		1,776㎡	문두봉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2가541-2	
325	축산리	562-5	벼		786㎡	박혜숙	군산시 임피면 축산리 141	
326	축산리	562-6	벼		1,182㎡	최수풍	군산시 임피면 읍내리 271-1	
327	축산리	563-1	벼		2,568㎡	이형식	군산시 임피면 읍내리 315	
328	축산리	563-2	벼		3,938㎡	채응목	익산시 황등면 황등리 653-1	
329	축산리	563-3	벼		3,954㎡	최전순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2가 541-2	
330	축산리	563-4	벼		3,972㎡	조남훈	군산시 임피면 읍내리 494-2	
331			오가피		10주	"	"	
332			관정	농사용	2식	"	"	
333	축산리	563-5	벼		4,122㎡	최수풍	군산시 임피면 읍내리 271-1	
334	축산리	563-6	벼		1,902㎡	조철희	군산시 임피면 미원리 350	
335	축산리	563-7	벼		2,562㎡	유영우	군산시 서수면 서수리 1263	
336	축산리	563-8	벼		4,007㎡	유길준	군산시 서수면 서수리 1263	
337	축산리	563-9	벼		1,500㎡	"	"	
338	축산리	563-10	벼		1,214㎡	국 (재정경제원)		
339	축산리	563-11	벼		1,236㎡	"		
340			관정	농업용	1식	유길준	군산시 서수면 서수리 1263	
341	축산리	565-2	관정	농업용	1식	"	"	
342	축산리	568-1	벼		2,284㎡	장화선외 3인	익산시 마동 158-15 삼호@1-906호	
343	축산리	568-2	벼		2,792㎡	"	"	
344	축산리	568-3	벼		478㎡	"	"	

345	축산리	568-4	벼		1,548m ²	김양순	군산시 임피면 읍내리 385	
346	축산리	568-5	벼		738m ²	송영자	군산시 임피면 읍내리 23-1	
347	축산리	568-6	벼		2,736m ²	"	"	
348	축산리	568-7	벼		2,898m ²	"	"	
349	축산리	568-8	벼		4,026m ²	"	"	
350	축산리	568-9	벼		4,000m ²	김정호	군산시 서수면 서수리 1285	
351	축산리	568-10	벼		4,024m ²	곽미영외 3인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이동 591-8	
352	축산리	568-11	벼		1,033m ²	진병덕	군산시 임피면 축산리 356-1	
353	축산리	568-12	벼		2,941m ²	"	"	
354	축산리	568-13	벼		1,856m ²	채수환	군산시 임피면 읍내리 450-4	
355	축산리	568-14	벼		2,187m ²	"	"	
356	축산리	569-1	벼		832m ²	이용기	군산시 대야면 산월리 389	
357	축산리	569-2	벼		911m ²	송영자	군산시 임피면 읍내리 23-1	
358	축산리	569-3	벼		2,480m ²	"	"	
359	축산리	569-4	벼		2,613m ²	이현진	익산시 동산동 1053-1 제일아파트	
360	축산리	569-5	벼		2,495m ²	이천식	군산시 임피면 읍내리 315	
361	축산리	569-6	벼		994m ²	"	"	
362	축산리	569-7	벼		1,138m ²	한이성	군산시 임피면 읍내리 318	
363	축산리	569-8	벼		2,088m ²	"	"	
364	축산리	569-9	벼		1,557m ²	"	"	
365	축산리	569-10	벼		1,756m ²	송영자	군산시 임피면 읍내리 23-1	
366	축산리	569-11	벼		1,989m ²	"	"	
367	축산리	569-12	벼		1,665m ²	장만상외 3인	군산시 임피면 미원리 82-1	
368	축산리	569-13	벼		498m ²	진병윤	인천시 남구 용현동 481	
369	축산리	569-14	벼		2,161m ²	"	"	
370	축산리	570-1	벼		2,864m ²	임규진	군산시 임피면 읍내리 329	
371	축산리	570-2	벼		1,200m ²	채수환	군산시 임피면 읍내리 450-4	
372	축산리	570-3	벼		4,085m ²	차상덕	군산시 임피면 읍내리 262	
373	축산리	570-4	벼		4,045m ²	장인상	군산시 임피면 축산리 241-7	
374	축산리	570-5	벼		1,600m ²	노성례	군산시 임피면 축산리 285-2	
375	축산리	570-6	벼		2,426m ²	"	"	
376	축산리	570-7	벼		1,644m ²	유선준	군산시 임피면 읍내리 25	
377	축산리	569-1 591	사무실	철재컨테이너 (간판포함)	1식	양성일	군산시 임피면 영창리 289-25	
378			바닥	콘크리트	1식	"	"	
379			가이즈카 향나무		9주	"	"	
380			백일홍		57주	"	"	
381			소나무		21주	"	"	

382	축산리	569-1 591	주목		19주	양성일	군산시 임피면 영창리 289-25	
383			동백나무		37주	"	"	
384			단풍나무		7주	"	"	
385			철쭉		20주	"	"	
386			석류나무		1주	"	"	
387			모과나무		4주	"	"	
388			꽃사과나무		38주	"	"	
389			남천		4주	"	"	
390			오엽송		1주	"	"	
391			사철나무		5주	"	"	
392			후박나무		2주	"	"	
393			목서		1주	"	"	
394			사과나무		3주	"	"	
395			목련		2주	"	"	
396			눈향나무		2주	"	"	
397			명자나무		1주	"	"	
398			영업보상	미래조경	1식	"	"	
399			관정	전력포함	1식	"	"	

군산시 고시 제2012-41호

도시계획시설(하수도)사업 실시계획 인가 고시

도시계획시설(하수도:대야하수처리장)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의거 실시계획 인가하고, 같은법 제9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관계도서는 군산시청(도시계획과 450-4447)에 비치하고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군 산 시 장
2012년 3월 30일

1. 사업시행지 : 군산시 대야면 산월리 27-15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가. 종 류 : 도시계획시설(하수도:대야하수처리장)
 - 나. 명 칭 : 대야 공공하수처리장 총인처리시설 설치공사
3.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구 분	시설명	결정(m ²)	실시계획(m ²)	건축계획		비 고
				건축면적(m ²)	연면적(m ²)	
하수도	대야 하수처리장	6,347	6,347	당초:348.44 변경:484.32 증:135.88	당초:986.28 변경:1,122.16 증:135.88	총인 처리시설
계			6,347			

4. 사업시행자
 - 가. 사업시행자 주소 : 군산시 시청로 17(조촌동 888)
 - 나. 사업시행자 성명 : 군산시장(하수과)
5.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일 : 2012. 3 ~ 2012. 6. 30
6.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등의 조서 : 불임참조
7.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8. 관계도서 : 게재실음 생략

□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순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소 유 자		소유권이외의권리자		비고
						성명	주 소	성명	주소	
1	대야면 산월리	13-19	구거	326	326	농수산부	경기도 과천시 관문 로 47			
2	대야면 산월리	13-20	구거	51	51	농수산부	경기도 과천시 관문 로 47			
3	대야면 산월리	27-15	잡종 지	4,195	4,195	군산시	군산시 시청로 17			
4	대야면 산월리	27-32	잡종 지	1,775	1,775	건설교통 부	경기도 과천시 관문 로 47			
계	4 필지			6,347	6,347					

군산시 고시 제2012-42호

군산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지형도면 승인·고시

군산 미군비행장 탄약고 주변 주민이주단지 조성사업을 위한 군산 도시관리계획 (내초지구 : 용도지역/제1종지구단위계획 구역 및 계획, 어은지구 : 용도지역/용도지구) 결정(변경)과 관련 전라북도 고시 제2012-21호에 의거 결정(변경) 고시된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승인·고시하고 동 결정(변경)도서 사본을 군산시청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군 산 시 장

2012년 3월 일

I. 군산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1.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총 계		456,524,971	—	456,524,971	100.0	
합 계		207,448,822	—	207,448,822	45.4	
도시지역	소 계	18,734,146	증)83,677	18,817,823	4.1	
	제1종전용주거지역	52,497	—	52,497	0.0	
	제2종전용주거지역	—	—	—	—	
	제1종일반주거지역	4,508,904	증)83,677	4,592,581	1.0	
	제2종일반주거지역	11,544,086	—	11,544,086	2.5	
	제3종일반주거지역	2,124,996	—	2,124,996	0.5	
	준주거지역	503,663	—	503,663	0.1	
	소 계	3,686,551	—	3,686,551	0.8	
	중심상업지역	—	—	—	—	
	일반상업지역	3,686,551	—	3,686,551	0.8	
	근린상업지역	—	—	—	—	
	유통상업지역	—	—	—	—	
	소 계	28,100,451	—	28,100,451	6.2	
	전용공업지역	23,071,408	—	23,071,408	5.1	
	일반공업지역	1,214,780	—	1,214,780	0.3	
	준공업지역	3,814,263	—	3,814,263	0.8	
	소 계	82,191,176	감)83,677	82,107,499	18.0	
	보전녹지지역	—	—	—	0.0	
	생산녹지지역	38,548,932	감)63,810	38,485,122	8.4	
	자연녹지지역	43,642,244	감)19,867	43,622,377	9.6	
	미지정	74,736,498	—	74,736,498	16.4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249,076,149	—	249,076,149	54.6	
비도시지역	소 계	123,224,389	—	123,224,389	27.0	
	보전관리지역	77,068,815	감)18,578	77,050,237	16.9	
	생산관리지역	17,313,864	—	17,313,864	3.8	
	계획관리지역	28,225,238	증)18,578	28,243,816	6.2	
	관리지역(미세분)	616,472	—	616,472	0.1	
	농림지역	123,974,760	—	123,974,760	27.2	
	자연환경보전지역	1,877,000	—	1,877,000	0.4	

■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 시번호	위 치	용도지역		면적 (㎡)	용적률 (%)	결정(변경)사유
		기 정	변 경			
-	내초동 159-7 일원	자연녹지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19,867	150	• 내초지구 이주단지 조성을 위한 용도지역 변경
-	내초동 155-1 일원	생산녹지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63,810	150	
-	옥구읍 어은리 1537-26 일원	보전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18,578	150	• 어은지구 이주단지 조성을 위한 용도지역 변경

2. 용도지구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 시번호	지구명	지구의세분	위 치	제한 내용	면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33	개발진흥지구	관광·휴양	옥구읍 어은리 1537-26일원	-	803,312	전북고141 (‘2010.6.11)	
변경	33	개발진흥지구	관광·휴양	옥구읍 어은리 1537-26일원	-	764,783	-	

■ 변경사유서

도면표 시번호	지구명	변경내용	변 경 사 유
33	개발 진흥지구	•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면적변경 - 당초 : 803,312㎡ - 변경 : 764,783㎡	• 어은지구 이주단지 조성을 위해 용도지구변경(관광·휴양 → 주거)

3.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① 구 분	② 구역명	③ 위치	④ 면적(㎡)			⑤ 비 고
			⑥ 기 정	⑦ 변경	⑧ 변 경 후	
⑨ 신 설	내초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내초동 157-3 일원	-	증)89,891	89,891	⑩

■ 변경사유서

⑪ 도 면 표 시 번호	⑫ 위 치	⑬ 면적 ⑭ (㎡)	⑮ 변경사유
-	내초동 157-3 일원	89,891	• 주민이주단지 조성을 위한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Ⅱ. 내초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조서

1.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1.1 교통시설

1.1.1 도로

■ 도로 총괄표

구분	합 계			1 류			2 류			3 류		
	노선 수	연장 (m)	면적 (㎡)	노선 수	연장 (m)	면적 (㎡)	노선 수	연장 (m)	면적 (㎡)	노선 수	연장 (m)	면적 (㎡)
합계	19	2,703	23,217	3	493	5,537	16	2,210	17,680	-	-	-
대로	-	-	-	-	-	-	-	-	-	-	-	-
중로	1	199	2,597	1	199	2,597	-	-	-	-	-	-
소로	18	2,504	20,620	2	294	2,940	16	2,210	17,680	-	-	-

■ 도로 결정(변경)조서

구분	구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 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광로	2	1	50	주간선 도로	16,755	옥석리 9호광장	군장국가산단 지구계	자동차 전용도로	군산 국가산단	건고37 ('76.3.27)	
변경	광로	2	1	50~53	주간선 도로	16,755	옥석리 9호광장	군장국가산단 지구계	자동차 전용도로	군산 국가산단	건고37 ('76.3.27)	
신설	중로	1	1	23	집산도로	199	광로2-1	내초지구 북측구역계	일반도로			
신설	소로	1	1	10	국지도로	269	중로1-1	소로2-15	일반도로			
신설	소로	1	2	10	국지도로	25	소로2-15	내초지구 동측구역계	보행자 전용도로			
신설	소로	2	1	8	국지도로	236	중로1-1	소로2-15	일반도로			
신설	소로	2	2	8	국지도로	209	소로2-6	소로2-15	일반도로			
신설	소로	2	3	8	국지도로	225	소로2-6	소로2-15	일반도로			
신설	소로	2	4	8	국지도로	317	소로2-5	소로2-16	일반도로			
신설	소로	2	5	8	국지도로	68	완충녹지5호	소로1-1	일반도로			
신설	소로	2	6	8	국지도로	131	소로1-1	소로2-1	일반도로			
신설	소로	2	7	8	국지도로	97	소로2-4	소로1-1	일반도로			
신설	소로	2	8	8	국지도로	129	소로2-4	소로1-1	일반도로			
신설	소로	2	9	8	국지도로	151	소로2-4	소로1-1	일반도로			
신설	소로	2	10	8	국지도로	42	소로1-1	소로2-3	일반도로			
신설	소로	2	11	8	국지도로	41	소로2-3	소로2-2	일반도로			
신설	소로	2	12	8	국지도로	41	소로2-2	소로2-1	일반도로			
신설	소로	2	13	8	국지도로	100	소로2-9	소로2-15	일반도로			
신설	소로	2	14	8	국지도로	126	소로2-4	소로2-13	일반도로			
신설	소로	2	15	8	국지도로	292	소로2-4	경관녹지1호	일반도로			
신설	소로	2	16	8	국지도로	5	소로2-4	내초지구 동측구역계	보행자전용도로			

■ 변경사유서

결정(변경)전 도로명	결정(변경)후 도로명	결정(변경)내용	변경사유
광로2-1호선	광로2-1호선	• 자동차전용도로 변경 - 폭원 : 50~53m	가감속차로 결정에 따른 변경
-	중로1-1호선	• 일반도로 신설 - 폭원 : 23m - 연장 : 199m	이주단지 조성에 따른 진입도로 확보를 위한 노선 신설
-	소로1-1호선	• 일반도로 신설 - 폭원 : 10m - 연장 : 269m	지구내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한 노선 신설
-	소로1-2호선	• 일반도로 신설 - 폭원 : 10m - 연장 : 25m	지구내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한 노선 신설
-	소로2-1호선	• 일반도로 신설 - 폭원 : 8m - 연장 : 236m	지구내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한 노선 신설
-	소로2-2호선	• 일반도로 신설 - 폭원 : 8m - 연장 : 209m	지구내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한 노선 신설
-	소로2-3호선	• 일반도로 신설 - 폭원 : 8m - 연장 : 225m	지구내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한 노선 신설
-	소로2-4호선	• 일반도로 신설 - 폭원 : 8m - 연장 : 317m	지구내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한 노선 신설
-	소로2-5호선	• 일반도로 신설 - 폭원 : 8m - 연장 : 68m	지구내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한 노선 신설
-	소로2-6호선	• 일반도로 신설 - 폭원 : 8m - 연장 : 131m	지구내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한 노선 신설
-	소로2-7호선	• 일반도로 신설 - 폭원 : 8m - 연장 : 97m	지구내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한 노선 신설
-	소로2-8호선	• 일반도로 신설 - 폭원 : 8m - 연장 : 129m	지구내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한 노선 신설
-	소로2-9호선	• 일반도로 신설 - 폭원 : 8m - 연장 : 151m	지구내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한 노선 신설
-	소로2-10호선	• 일반도로 신설 - 폭원 : 8m - 연장 : 42m	지구내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한 노선 신설
-	소로2-11호선	• 일반도로 신설 - 폭원 : 8m - 연장 : 41m	지구내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한 노선 신설
-	소로2-12호선	• 일반도로 신설 - 폭원 : 8m - 연장 : 41m	지구내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한 노선 신설
-	소로2-13호선	• 일반도로 신설 - 폭원 : 8m - 연장 : 100m	지구내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한 노선 신설
-	소로2-14호선	• 일반도로 신설 - 폭원 : 8m - 연장 : 126m	지구내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한 노선 신설
-	소로2-15호선	• 일반도로 신설 - 폭원 : 8m - 연장 : 292m	지구내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한 노선 신설
-	소로2-16호선	• 일반도로 신설 - 폭원 : 8m - 연장 : 5m	지구내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한 노선 신설

1.1.2 주차장

■ 주차장 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신설	1	주차장	내초동 156-3 일원	-	증)504	504		노외 주차장

■ 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 경 사 유
1	주 차 장	• 주차장 신설 - 면적 504㎡	이주단지 내 노외주차장 신설

1.2 공간시설

1.2.1 공원

■ 공원 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 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1	공원	어린이 공원	내초동 157-3 일원	-	증)1,500	1,500		

■ 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1	공원	• 공원 신설 - 면적 : 1,500㎡	이주단지내 어린이공원 신설

1.2.2 녹지

■ 녹지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 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완충녹지5	녹지	완충녹지	8호광장 ~내초동주거지역	51,840 (4,541)	감)889	50,951 (3,652)	건고37 (‘76.3.27)	
신설	완충녹지1	녹지	완충녹지	내초동 159-8 일원	-	증)222	222		
신설	경관녹지1	녹지	경관녹지	내초동 159-8 일원	-	증)2,905	2,905		

()는 구역 내 면적임

■ 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완충녹지5	완충녹지	• 완충녹지 변경 - 면적 : 감)889㎡	이주단지 진입도로 및 가감속차로 결정에 따른 변경
완충녹지1	완충녹지	• 완충녹지 신설 - 면적 : 222㎡	대기오염 · 소음 · 진동 · 악취 등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
경관녹지1	경관녹지	• 경관녹지 신설 - 면적 : 2,905㎡	자연환경 보호, 도시경관 향상 및 완충공간 확보를 위해 설치

2.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구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 적(m ²)	획 지			비고
			획지번호	위 치	면 적(m ²)	
도면4	A1	2,845	1	내초동 156-2답 일원	360	
			2	내초동 156-2답 일원	355	
			3	내초동 156-2답 일원	355	
			4	내초동 156-2답 일원	355	
			5	내초동 156-9답 일원	355	
			6	내초동 156-9답 일원	355	
			7	내초동 156-9답 일원	355	
			8	내초동 156-9답 일원	355	
도면4	A2	3,061	1	내초동 156-2답 일원	371	
			2	내초동 156-2답 일원	370	
			3	내초동 157-2답 일원	370	
			4	내초동 157-2답 일원	370	
			5	내초동 157-2답 일원	398	
			6	내초동 157-2답 일원	394	
			7	내초동 157-2답 일원	394	
			8	내초동 156-2답 일원	394	
도면4	A3	3,584	1	내초동 156-9답 일원	341	
			2	내초동 156-9답 일원	340	
			3	내초동 157-2답 일원	342	
			4	내초동 157-2답 일원	342	
			5	내초동 157-2답 일원	342	
			6	내초동 157-2답 일원	368	
			7	내초동 157-2답 일원	377	
			8	내초동 156-9답 일원	380	
			9	내초동 156-9답 일원	384	
			10	내초동 156-9답 일원	368	
도면4	A4	4,105	1	내초동 156-9답 일원	334	
			2	내초동 156-9답 일원	334	
			3	내초동 156-9답 일원	334	
			4	내초동 157-2답 일원	334	
			5	내초동 157-2답 일원	334	
			6	내초동 157-2답 일원	333	
			7	내초동 157-3답 일원	350	
			8	내초동 157-3답 일원	350	
			9	내초동 157-3답 일원	350	
			10	내초동 156-3답 일원	350	
			11	내초동 156-3답 일원	350	
			12	내초동 156-3답 일원	352	
도면4	A5	3,011	1	내초동 157-2답 일원	373	
			2	내초동 157-2답 일원	380	
			3	내초동 159-18답 일원	380	
			4	내초동 159-18답 일원	373	
			5	내초동 159-18답 일원	373	
			6	내초동 159-18답 일원	379	
			7	내초동 157-2답 일원	380	
			8	내초동 157-2답 일원	373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 적(m ²)	획 지			비고
			획지번호	위 치	면 적(m ²)	
도면4	A6	3,011	1	내초동 157-2답 일원	373	
			2	내초동 157-2답 일원	380	
			3	내초동 159-18답 일원	380	
			4	내초동 159-18답 일원	373	
			5	내초동 159-18답 일원	373	
			6	내초동 159-18답 일원	379	
			7	내초동 157-2답 일원	380	
			8	내초동 157-2답 일원	373	
도면4	A7	3,011	1	내초동 157-2답 일원	373	
			2	내초동 159-18답 일원	380	
			3	내초동 159-18답 일원	380	
			4	내초동 159-18답 일원	373	
			5	내초동 159-7답 일원	373	
			6	내초동 159-7답 일원	379	
			7	내초동 159-7답 일원	380	
			8	내초동 157-3답 일원	373	
도면4	A8	2,522	1	내초동 159-18답 일원	357	
			2	내초동 159-18답 일원	358	
			3	내초동 159-18답 일원	358	
			4	내초동 159-18답 일원	359	
			5	내초동 159-18답 일원	360	
			6	내초동 159-18답 일원	360	
			7	내초동 159-7답 일원	370	
도면4	A9	1,412	1	내초동 156-3답 일원	351	
			2	내초동 155-1대 일원	351	
			3	내초동 155-1대 일원	350	
			4	내초동 155-1대 일원	360	
도면4	A10	3,508	1	내초동 156-3답 일원	319	
			2	내초동 156-3답 일원	319	
			3	내초동 156-3답 일원	319	
			4	내초동 156-3답 일원	319	
			5	내초동 156-4답 일원	342	
			6	내초동 156-4답 일원	378	
			7	내초동 156-4답 일원	378	
			8	내초동 156-3답 일원	378	
			9	내초동 156-3답 일원	378	
			10	내초동 156-3답 일원	378	
도면4	A11	4,004	1	내초동 157-3답 일원	378	
			2	내초동 157-3답 일원	378	
			3	내초동 157-3답 일원	378	
			4	내초동 157-4답 일원	378	
			5	내초동 157-4답 일원	395	
			6	내초동 157-4답 일원	342	
			7	내초동 157-4답 일원	351	
			8	내초동 157-4답 일원	351	
			9	내초동 157-3답 일원	351	
			10	내초동 157-3답 일원	351	
			11	내초동 157-3답 일원	351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 적(m ²)	획 지			비고
			획지번호	위 치	면 적(m ²)	
도면4	A12	3,011	1	내초동 157-3답 일원	373	
			2	내초동 157-3답 일원	380	
			3	내초동 159-7답 일원	380	
			4	내초동 159-7답 일원	373	
			5	내초동 159-7답 일원	373	
			6	내초동 159-7답 일원	379	
			7	내초동 157-3답 일원	380	
			8	내초동 157-3답 일원	373	
도면4	A13	4,581	1	내초동 157-3답 일원	365	
			2	내초동 157-3답 일원	372	
			3	내초동 157-4답 일원	372	
			4	내초동 157-4답 일원	372	
			5	내초동 157-4답 일원	372	
			6	내초동 157-4답 일원	364	
			7	내초동 157-4답 일원	330	
			8	내초동 157-4답 일원	340	
			9	내초동 157-4답 일원	340	
			10	내초동 157-4답 일원	340	
			11	내초동 157-4답 일원	340	
			12	내초동 157-3답 일원	340	
			13	내초동 157-3답 일원	334	
도면4	A14	4,945	1	내초동 159-7답 일원	348	
			2	내초동 159-7답 일원	355	
			3	내초동 159-8답 일원	355	
			4	내초동 159-8답 일원	355	
			5	내초동 159-8답 일원	355	
			6	내초동 159-8답 일원	355	
			7	내초동 159-8답 일원	349	
			8	내초동 159-8답 일원	349	
			9	내초동 159-8답 일원	355	
			10	내초동 159-8답 일원	355	
			11	내초동 159-8답 일원	355	
			12	내초동 159-8답 일원	355	
			13	내초동 159-7답 일원	355	
			14	내초동 159-7답 일원	349	
도면4	A15	3,311	1	내초동 159-7답 일원	366	
			2	내초동 159-7답 일원	366	
			3	내초동 159-7답 일원	366	
			4	내초동 159-7답 일원	367	
			5	내초동 159-7답 일원	368	
			6	내초동 159-8답 일원	368	
			7	내초동 159-8답 일원	369	
			8	내초동 159-8답 일원	370	
			9	내초동 159-8답 일원	371	
도면4	A16	764	1	내초동 159-8답 일원	382	
			2	내초동 159-8답 일원	382	
도면4	작1	3,250	-	내초동 156-3답 일원	3,250	공동작업장
도면4	마1	324	-	내초동 156-3답 일원	324	마을회관
도면4	주1	504	-	내초동 156-3답 일원	504	노외주차장
도면4	어1	1,500	-	내초동 157-3답 일원	1,500	어린이공원

3.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 주거용지

도면 번호	위 치 (가구번호)	구분	계획내용	
도면5	A1~A12	용도	허용용도	- 제1종 일반주거지역 내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단, 지하층 주거용도 불허) - 단독주택(다중주택 제외)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가목 및 바목에 해당하는 시설 (근린생활시설은 건축연면적의 50%이내에서 1층에 한함)
			불허용도	- 허용용도 외의 용도 - 가설건축물의 설치 불허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150% 이하	
		높이	3층 이하	
		1필지당 가구수	3가구 이하	
		배치	- 일조권 및 조망권 확보를 통해 쾌적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남향위주 배치권장 - 점포주택은 전면도로로부터 일정간격 후퇴하여 건축물 전면에 통일된 가로경관이 형성될 수 있도록 배치	
		형태	- 지붕형태, 옥탑 등 - 경사지붕 또는 디자인된 조형지붕을 원칙으로 한다. - 옥외에 설치하는 설비(물탱크, 안테나 등)는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고, 건축물 형태 및 외관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설치 - 난간높이의 경사지붕면을 평지붕외곽에 설치하는 것을 금지하며, 박공형식의 지붕으로 한다. - 이때 지붕구배는 기로방향에 직교하도록 계획 - 외관 - 발코니는 돌출형을 금지하되 덧붙임 등 디자인된 형태로 계획하여 미려한 경관추구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 - 경관향상을 위해 옥상부분의 냉각탑, 물탱크 등 건축설비는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차폐시설을 설치 - 담장 및 대문 - 담장 및 대문을 설치할 경우, 투시형 및 생울타리 등으로 설치 하도록 하고, 담장은 1.2m 이하, 대문은 1.8m 이하로 한다. - 재료, 색깔 및 장식은 본 건물의 외벽과 조화되도록 설치 - 점포주택은 담장 설치를 불허 - 기타 - 옥외계단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난간 전체를 콘크리트로 마감 처리하는 것을 불허 - 단지 내부 및 외부의 방법을 위한 가로등을 설치 시에는 벽면 부착형 가로등을 설치를 권장하며, 지주형으로 설치 시에는 품격 있는 디자인을 사용하여 조성	

도면 번호	위 치 (가구번호)	구분	계획내용	
도면5	A1~A12	옥외광고물	• 옥외광고물의 설치량을 최소화하기 위해 한 점포당 1개의 간판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곡각지점 점포는 2개 이내 허용) 과도하게 넓은 면적의 간판은 지양 • 효과적인 정보전달 매체로서의 효과를 위해 1층의 근린생활시설은 고유브랜드의 서체나 색채를 사용 • 옥외광고물의 문자표기시 한글맞춤법, 국어의 로마표기법, 외래어 표기법 등에 맞추어 한글로 표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상품 및 업소를 상징하는 도형을 이용할 수 있으나 메뉴, 실물사진 등의 표기는 금지 • 건축물과의 연계성을 위해 광고물을 건축물 입면요소의 일부로 계획하고 건축물 고유디자인을 보호하여 통합적 이미지를 구축 • 본 지침에 제시되지 않은 사항은 옥외광고물등관리법(이하 “법”이라 함), 같은 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함), 군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적용 • 옥외광고물등 관리법시행령 제3조에 제시된 16개 옥외광고물 중 가로형간판, 돌출간판,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은 본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라 표시할 수 있으며, 지주이용간판, 세로형간판, 애드벌룬, 현수막, 창문이용 광고물 등은 표시를 금지	
		색채	• 지표 위부터 최상부 까지 2가지 이내의 주된 입면마감 재료를 통일적으로 사용(건축물의 특징을 부각시킬 수 있는 마감재는 부분적으로 사용 가능) • 건축물 외벽 색채는 주조색, 보조색, 강조색으로 구분하여 적용 - 주조색은 다양한 색상사용을 허용하되 명도는 중명도 이상 채도는 7 이하로 제한하여 밝고 차분한 분위기를 연출 - 보조색은 주조색과 유사한 계열로 2차 혼합색을 사용하도록 권장 - 강조색은 자유롭게 사용하도록 하지만, 형광색과 원색 사용 지양 - 강조색은 건축물 모서리나 층간에 사용함으로써 선의 이미지를 강조, 경쾌한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도록 권장	
		건축선	건축지정선	-
			건축한계선	• 중로1-1번, 소로1-1번에 1m 건축한계선

■ 공공시설용지(마을회관)

도면 번호	위 치 (가구번호)	구분	계획내용	
도면5	마1	용도	허용용도	- 제1종 일반주거지역 내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사목에 해당하는 시설(마을회관)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바목에 해당하는 시설(사무소)
			불허용도	• 허용용도 외의 용도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150% 이하	
		높이	3층 이하	
		배치	• 일조권 및 조망권 확보를 통해 쾌적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가급적 남향 배치권장	
		형태	• 외관 - 건축물의 외벽은 모든 면의 마감수준이 동일하거나 최소한 서로 조화를 이루어야 하고 주변 건축물과도 조화를 유지하여야 한다. - 지역의 상징이 될 수 있는 건축물 디자인을 고려 • 담장 - 모든 건축물은 가급적 담장을 설치하지 않도록 권장. - 불가피하게 담장을 설치할 경우에는 보행환경의 쾌적성 및 경관 등을 증진시킬 수 있는 소재 및 형태로 설치하되, 1.2m 이하의 투시형 담장이나 생울타리 등으로 설치할 것을 권장	
		건축선	건축지정선	-
			건축한계선	• 중로1-1번, 소로1-1번에 1m 건축한계선

■ 공공시설용지(공동작업장)

도면 번호	위 치 (가구번호)	구분	계획내용	
도면5	작1	용도	허용용도	- 제1종 일반주거지역 내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사목에 해당하는 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바목에 해당하는 시설(사무소) - 간이공작물(공작물 중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동·림·수산물의 건조장에 국한)
			불허용도	• 허용용도 외의 용도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150% 이하	
		높이	3층 이하	
		배치	• 일조권 및 조망권 확보를 통해 쾌적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가급적 남향위주로 배치유도	
		형태	• 외관 - 건축물의 외벽은 전면이나 측면의 구별없이 모든 면의 마감수준을 동일하게 처리하거나 최소한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일관성을 지님 - 지역의 상징이 될 수 있는 건축물 디자인을 고려 • 담장 - 모든 건축물은 가급적 담장을 설치하지 않도록 권장. - 불가피하게 담장을 설치할 경우에는 보행환경의 쾌적성 및 경관 등을 증진시킬 수 있는 소재 및 형태로 설치하되, 1.2m 이하의 투시형 담장이나 생울타리 등으로 설치할 것을 권장	
		건축선	건축지정선	-
			건축한계선	• 중로1-1번, 소로1-1번에 1m 건축한계선

■ 공공시설용지(주차장)

도면 번호	위 치 (가구번호)	구분	계획내용	
도면5	주1	용도	허용용도	• 주차장법 및 군산시 주차장조례에 의한 노외주차장 및 그 부속시설
			불허용도	• 허용용도 외의 용도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150% 이하	
		높이	3층 이하	
		배치	• 일조권 및 조망권 확보를 통해 쾌적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가급적 남향위주로 배치유도	
		형태	• 외관 - 건축물의 외벽은 전면이나 측면의 구별없이 모든 면의 마감수준을 동일하게 처리하거나 최소한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일관성을 지님 • 담장 - 모든 건축물은 가급적 담장을 설치하지 않도록 권장. - 불가피하게 담장을 설치할 경우에는 보행환경의 쾌적성 및 경관 등을 증진시킬 수 있는 소재 및 형태로 설치하되, 1.2m 이하의 투시형 담장이나 생울타리 등으로 설치할 것을 권장	
			건축선	건축지정선 - 건축한계선 • 중로1-1변, 소로1-1변에 1m 건축한계선

Ⅲ. 군산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지형도면고시도 : 게재생략

1. 군산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지형도면고시도

2. 내초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 지형도면고시도

※ 관련도면은 군산시 도시계획과(063-450-4446) 및 공영사업과 (063-450-4448)에 비치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함

군산시 고시 제2012-43호

도로명주소(부여·변경·폐지) 및 관련지번 변경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제6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변경·폐지한 도로명주소 및 변경 된 관련지번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 4. 2. ~ 4. 16.

군 산 시



○ 도로명주소 부여 : 185건

지번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주소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별 도 열 람				

○ 도로명주소 변경 : 53건

지번주소	종전 도로명주소	변경된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주소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별 도 열 람					

○ 도로명주소 폐지 : 1건

지번주소	폐지된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폐지 고시일	폐지사유
별 도 열 람				

○ 관련지번 변경 : 92건

지번주소	폐지된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폐지 고시일	폐지사유
별 도 열 람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토지정보과(☎450-6083)에 문의 또는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군산시 고시 제 2012-44호

어장관리법 제14조 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2012년도 어장정화·정비 실시계획을 고시합니다.

2012년 3월 일

군 산 시 장

2012년도 어장정화·정비 실시계획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어장환경을 보전·개선하여 지속가능한 어업 생산기반 조성 및 어장의 생산성 향상을 통한 어업인의 소득증대 기여하고자 우리시 관할어장에 대하여 어장정화·정비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데 있다.

제2조(시행기간) 어장정화·정비실시계획 기간은 2012년 1년으로 한다.

제3조(대상어장) ① 「어장관리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정에 따라 「수산업법」 제8조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면허를 받아 어업을 하는 수면

② 「어장관리법」 제12조에 따라 「수산업법」 제41조제3항제3호(수산업법시행령 제 27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육상종묘생산어업 제외)에 의한 허가를 받아 어업을 하는 일정한 수면

③ 어장과 어장사이의 수면 등 어장 주변의 공유수면

제4조(계획의 주요 내용) 어장환경의 보전·개선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에 대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① 어장정화·정비 및 어장관리해역 지정·운영

- ② 정부지원 어장정화사업의 우선순위 선정
- ③ 어장환경실태조사 및 해역별 어장환경개선계획
- ④ 기타 효율적인 어장관리를 위한 사항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2012년도 어장정화·정비 실시계획

1. 목 적

- 어장환경을 보전·개선하여 지속 가능한 어업생산기반 조성 및 어장의 생산성 향상을 통한 어업인의 소득 증대 기여하고자 함

2. 정책목표 및 추진방향

- 어장관리해역지정을 통한 해역별로 체계적인 사업 추진
- 오염해역 및 오염이 우려되는 해역을 중심으로 사업 추진
- 국고보조사업 중 어장정화·정비사업의 효율적인 예산집행
- 어장 여건 및 어장정화·정비 등을 감안한 어장 재배치
- 어업권자의 어장관리의무 이행을 확행
- 지방자치단체장의 폐어구 수거·처리장소 설치 운영

3. 법적근거

- 어장관리법 제14조(어장정화·정비 실시계획 등)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 (어장정화·정비 실시계획의 수립 등)
- 어장관리법 제12조(어장의 관리의무 등) 및 동법 제13조(어업인의 어장관리의무)

4. 대상어장

- 「어장관리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정에 따라 「수산업법」 제8조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면허를 받아 어업을 하는 수면
- 「어장관리법」 제12조에 따라 「수산업법」 제41조제3항제3호(수산업법시행령 제27조 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육상종묘생산어업 제외)에 의한 허가를 받아

어업을 하는 일정한 수면

- 어장과 어장사이의 수면 등 어장 주변의 공유수면

5. 2012년도 어장정화 추진계획

가. 정화대상 어업권 현황

(단위 : ha)

구 분		건 수(면적)	대 상	제 외	비 고
합 계		156 (5,580)	26 (576.5)	130(5,003.5)	제외어업권은 '10년~ '11년 실시
면허 어업	해조류	49 (4,043)	10 (311.50)	39 (1,738)	
	패 류	48 (674)	14 (235)	34 (439)	
	어류 등	3 (51)	0	3 (51)	
	마을어업	56 (813)	2 (30)	54 (783)	

※ 어장청소 주기

- 어업면허·허가(기간연장 허가포함)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실시하고,
그 후 3년마다 1회 이상 실시

- 기 간 : 2012. 3월 ~ 12월 까지

- 청소방법 : 어업권자별로 어장여건을 감안하여 청소 실시

- 실적제출 : 어장청소 후 추진실적을 증빙자료(사진 포함) 첨부하여 우리시 제출

- 기 타

- 어업권의 효력이 소멸되었거나 어업시기 종료된 어장 시설물은
어업권자 자진철거 조치

나. 어장주변 수역 정화

○ 대상수역 및 면적 : 3개 수역 / 600ha

시군별	수역별	정화면적	소요일수	작업기간
합계	3개 수역	600ha	40일	8~11월중
군산시	3개	600ha	40일	8~11월중
	○ 옥도면 명도리 지선 35-48-897, 126-20-598 35-48-897, 126-19-963 35-49-947, 126-19-963 35-49-947, 126-20-598	200ha	40일	
	○ 옥도면 관리도 지선 35-48-598, 126-20-631 35-48-266, 126-20-066 35-47-416, 126-20-834 35-47-731, 126-21-399	200ha		
	○ 옥도면 관리도 지선 35-47-432, 126-22-049 35-46-666, 126-23-000 35-46-283, 126-22-532 35-47-033, 126-21-598	200ha		

○ 정화기간 : 8월 ~ 11월중(40일 정도)

○ 정화선박 : 전라북도 어장정화선단 2척(전북901호 및 902호)

○ 정화작업내용

- 해저 침적 각종 오폐물(폐양식 기자재, 폐어망 등)수거 및 경운
- 불가사리 등 구제

○ 기 타

- 수거된 폐기물을 우리시에서 인수받아 폐기물처리업체에서 폐기처분
(매년 2백만원 처리비용 확보)

다. 정부지원 어장정화사업의 우선순위 선정

- 어장의 장기이용으로 생산성이 저하되고 병해발생 등 어업피해가 빈발한 어장
- 해상 유류사고 등으로 저질 및 주변 수역이 오염된 어장
- 어장이 불규칙하게 개발되고 시설물이 과다 설치되어 어장의 생산성 저하 및 관리가 곤란한 어장
- 육상기인 오염물 유입이 심하여 어업권자의 어장의 관리의무 중 어장청소로 퇴적물의 처리가 곤란한 어장
- 기타 정화·정비를 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어업면허 또는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어장

6. 양식어장 정화사업 세부추진계획

가. 일반 양식어장 중심에서 주 오염해역 중심으로 사업 추진

- 육상기인 오염물질 유입이 심화되는 지역의 어촌계 등 공동어장을 중심으로 시행 (다만, 다수 어장이 설치된 해역으로 정화선박을 이용하여 정화사업의 수행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인접한 개인 어장과 주변수역을 포함하여 사업 시행)
- 어장정화사업의 효과 제고를 위해 가능한 대상어장을 집단·광역화하여 실시
- 어장여건과 양식 품종에 맞춰 퇴적물 수거, 경운, 객토, 준설 등의 세부사업을 균형 있게 시행
- 어업권의 효력이 소멸되었거나 어업시기가 종료된 어장의 시설물은 어업권자가 이를 철거하도록 조치하고 철거의무가 면제된 시설물은 시장 철거 조치

나. 양식어장 시설물 재배치는 해역별 환경용량, 어장정화사업의 일제 실시 등을 고려, 양식품종 및 시설규모 등 조정

- 어장정화·정비 후 시설물을 재배치할 경우,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어장이용개발계획 및 전문기관의 용역결과에 따라 처분
- 어장시설물 재배치 완료 후에는 불법 시설물 설치 여부 지속조사·조치
- 어장시설물 재배치시 부자를 교체하는 경우 개량부자 사용 권장

다. 양식어업권자에 대한 어장관리 의무 이행 조치

- 어장청소의무 안내 및 청소 확인, 청소사진과 폐기물처리증명서 등으로 증명하는 경우 청소 확인 같음
- 청소의무 이행여부를 정기적 점검하여 이를 이행하지 않는 어업권자에 대하여 관계규정에 의거 행정조치
- 어구 및 양식시설물 등을 철저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어구 및 양식 시설물 등을 어장에 버리거나 방치해서는 안되며, 시장이 지정한 장소 이외의 장소에 방치(존치) 금할 경우 관계규정에 의거 행정조치.

라. 양식어장 불법행위 지속 단속

- 어장정화·정비로 인양된 오·폐물, 유기산 사용 용기 등은 재 투기 등에 의한 2차 오염 발생치 않도록 조치
- 양식장 무면허 시설 및 법정시설기준 초과 설치, 무기산 등 유해약품 사용 단속 실시하여 관련규정에 의거 행정조치
- 어구 및 양식시설물 등 유실예방 및 투기금지 홍보

마. 어업여건 및 어장의 특성 등을 감안, 별도 관리할 필요가 있는 아래의 일정 수면을 어장관리해역으로 지정

- 과다 개발되어 어업활동, 어장관리 등에 영향을 미치는 어장
- 각종 어장시설물이 밀집되어 어장의 위치 등 어업인간 분쟁이 발생하는 어장

- 장기간의 양식으로 잦은 병해발생, 상습 어업재해 발생 등 정상적인 어업활동에 지장을 주는 어장
- 어장과 주변수면 오염물 다량 퇴적으로 어장정화사업의 지속 추진이 필요한 어장
- 어업인 자율에 의하여 어장관리 의무이행이 곤란할 정도로 어장 환경이 악화되거나 다수의 어업인이 지정을 요청하는 어장
- 기타 어장관리를 위하여 적정 조치가 필요한 어장

바. 어업인이 폐어구를 수거·처리할 수 있는 장소 지정·운영
(어업인이 이용하기에 용이한 장소 선정)

□ 어업인 지도홍보

- 어업권의 효력이 소멸되었거나 어업시기가 종료된 어장의 시설물은 어업권자 자진 철거
- 어장정화정비 후 시설물을 재배치하는 경우에는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과 어장이용개발계획 및 전문기관의 용역결과 반영 시행
- 어장시설물을 재배치할 때 부자를 교체하는 경우 개량부자 사용
- 청소의무 이행하지 않는 어업권자의 관계규정에 의한 행정조치 등 불이익 처분
- 어업활동 중 어구 및 양식시설물 등 철저 관리
 (폐어구 등의 투기 또는 방치 금지)
 - 인양된 오폐물, 유기산 사용용기 등 재투기에 의한 2차 오염 발생치 않도록 조치

- 어구와 양식시설물 등을 어장에 설치할 때 사용하는 부표 규격화
 - 대 상 : 2008.12.28이후 최초로 설치하는 어장부표부터 적용
 - 규격 제품
 - 발포 부표(폴리스타일렌 부표) : 고밀도($0.02\text{g}/\text{cm}^3$ 이상) 제품
 - 비발포 부표 : 합성수지를 재료로 성형하거나 피복된 제품
 - 친환경 개량 부표 : 국가 또는 지자체 지원사업을 통한 어업인 보급 부표
- ※ 규격, 부피, 밀도 및 제조자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부표규격 표시

☐ 행정사항

- 어업권자에게 어장청소를 실시한 후 청소실적 제출 지도
- 어업인 교육 및 회의시 어장청소 실시 지도·홍보
(어장정화정비사업 포함)
- 청소의무 이행하지 않는 어업권자 관계규정에 의한 행정조치 등 불이익 처분.

군산시 공고 제2012-527호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고시

「주택법」 제16조, 같은법시행령 제15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9조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하고 같은법 제16조 제6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2. 03. 13.

군 산 시 장

1. 사 업 명 : 산북동 하나리움아파트 신축공사
2. 사업주체
 - 가. 회사명/대표 : (주)하나건설 / 대표 : 박안수
 - 나. 주 소 : 광주광역시 남구 진월동 294-1번지
3. 사업내용
 - 가. 사업위치 : 군산시 산북동 1-5번지
 - 나. 주택구분 : 공공건설임대주택
 - 나. 대지면적 : 49,412.0000m²
 - 다. 건축면적 : 9,075.6607m²
 - 라. 연 면 적 : 114,861.8889m²
 - 마. 건축규모 : 아파트14동 10~18층, 952세대
 - 전용 59.9896m² 823세대
 - 전용 59.9845m² 129세대
 - 바. 구 조 : 철근콘크리트 구조
 - 사. 사 업 비 : 129,959,782천원
 - 아. 사업기간 : 2012. 01 ~ 2014. 02
4. 설계도서 : 승인설계도서와 같음
5. 주택법 제17조 1항에 의한 고시 :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 고시
6. 기타 자세한 사항의 관계도면 및 서류는 군산시청(건축과 ☎ 063-450-4228)에 비치되어 있으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고시

1.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조서

가.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위 치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점	종점				
기정	소로	2	358	8~14	국지 도로	400	산북동 산35-7 소로1-143	산북동 산32-2 소로2-360	일반 도로	제4토지	전북고45 (‘83.3.10)	
변경	중로	3	66	11~14	국지 도로	400 (107)	산북동 산35-7 소로1-143	산북동 산32-2 소로2-360	일반 도로	제4토지	전북고45 (‘83.3.10)	
기정	소로	2	360	8~12	국지 도로	1,097	산북동 250 중로2-58	소룡동 1420-1 소로2-355	일반 도로	제4토지	전북고45 (‘83.3.10)	
변경	소로	2	360	8~12	국지 도로	1,097 (67)	산북동 250 중로2-58	소룡동 1420-1 소로2-355	일반 도로	제4토지	전북고45 (‘83.3.10)	

※ ()는 폭원 변경부분 연장임

나. 변경사유서

구분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변경	소로2-358	중로3-66	· 일부구간(L=107m) 폭원확장(B=증 3m) · 도로등급 및 류별 변경 (소로2류→중로3류)	하나리움아파트 주변의 교통 안전성 및 도로 이용효율 제고
변경	소로2-360	소로2-360	· 일부구간(L=67m) 폭원확장(B=증 4m)	하나리움아파트 주변의 교통 안전성 및 도로 이용효율 제고

군산시 공고 제2012-667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전 열람공고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및 제90조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및 실시계획 변경인가전 열람을 실시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자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합니다.

군 산 시 장
2012년 3월 30일

1. 공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20일간
2. 공람장소 : 군산시청 도시계획과
3. 실시계획인가 신청요지
 -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군산시 지곡동 315번지 일원
 -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1) 종 류 : 도시계획시설(도로:대로2-11호 외 5개노선)사업
 - 2) 명 칭 : 아파트 신축계획에 따른 도시계획도로 개설
 - 다. 사업의 면적 및 규모

구 분	노 선 명	시설결정		실시계획 변경인가						비 고
				당 초			변 경			
		폭원 (m)	연장 (m)	폭원 (m)	연장 (m)	면적 (㎡)	폭원 (m)	연장 (m)	면적 (㎡)	
도 로	대로2-11	30	990	30	344	5,145	30	344	5,138	
	중로1-17	20	380	20	190	2,214	20	190	2,223	
	소로2-582	8	114	8	114	961	8	114	959	
	소로2-585	8	84	8	8	64	8	8	64	
	소로2-577	8	371	8	295	2,543	8	295	2,423	
	소로2-685	8	20	8	20	187	8	20	187	
계	6개노선		1,959		971	11,114		971	10,994	

라. 사업시행자 주소 및 성명

- 1) 사업시행자 주소 : 당초 군산시 조촌동 565-3 용경빌딩 2층
변경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943-19 신안빌딩12층

- 2) 사업시행자 성명 : 당초 (주)민성디앤씨 대표 황종택
변경 (주)하나다울신타 대표 이병철

마.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일 : 당초 2010. 7. ~ 2012. 12. 31.

변경 2012. 3. ~ 2014. 10. 31.

바.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 붙임조서 참조

4. 관계도서는 열람 장소에 비치하고 있으니 열람 기간내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으시면 의견서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도시계획과 (450-444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군산시 공고 제2012-677호

공 고

1. 군산시 미원지구 주거환경개선 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계획서를 동법 제31조 및 동법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일반인에게 공람하여 의견을 듣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 본 사업시행계획서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공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공람장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 3월 27일

군 산 시 장

가. 정비구역 지정

① 정비구역 지정 조서

구분	구 역 명	위 치	면 적(m ²)	비고
신설	군산시 미원지구 주거환경개선 정비구역	군산시 미원동 311번지 일원	46,077.4	

② 사업시행계획서 주요내용

- (가) 토지이용계획에 관한 계획
- (나) 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 (다) 건축물의 주용도, 건폐율, 용적율, 높이, 층수에 관한 계획
- (라) 기타 시행규정(정비사업명칭, 시행년도 및 시행자, 국·공유지조서 등)

③ 공람 공고기간 : 2012. 4. 2 ~ 2010. 4. 15(공고일로부터 14일간)

④ 공람장소 및 의견제출 : 군산시청 건축과

⑤ 관련도서 열람 : 군산시청 건축과 비치

⑥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건축과(☎450-447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